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麗末鮮初의 '奴婢-天民' 認識과 ユ 兩面性

2020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歴史專攻 崔 源 夏

麗末鮮初의 '奴婢-天民' 認識과 ユ 兩面性

指導教授 朴 平 植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6月

>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歴史專攻 崔 源 夏

崔源夏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年 7月

委員	長	(인)
副委	員長	(인)
委	員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麗末鮮初 시기 奴婢를 天民으로 인식하는 지배층의 관점이 성립된 배경과 그러한 인식의 兩面性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성리학 사상에 입각한 노비제 인식을 중심으로 여말선초 시기가 시 대적 전환기로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고려후기 노비 문제의 실태에 주목하게 된 士大夫들은 노비에 대한 적절한 救護를 요구하는 한편, 노비의 참람한 행동 또한 억제해야 한다고보았다. 이들의 두 가지 입장은 충숙왕 후8년 監察司의 禁令에 그 초기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奴婢를 天民으로 보는 인식으로 종합되었다.

조선초기 국가의 노비 정책에서도, 노비를 다른 民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려는 정책과 網常名分의 질서를 확립하여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함께 나타났다. 이 시기 양반 지배층은 東國의 奴婢法이箕子 八條法에서 비롯되어 敎化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天民인노비를 天分에 의한 網常 질서에서 아래에 놓인 敎化의 대상으로 규정한것이다. 결국 奴婢를 天民으로 보는 인식은 양반 지배층이 성리학적 網常名分論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로 기능했다.

綱常名分의 확립을 통해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양반지배층의 의지는 경우에 따라서 노비를 國家의 公民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國家의 의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國家와 私家가 노비 지배를 둘러싸고 갈등한 사정은 奴婢-天民 인식의 兩面性과 관련되어 있었다. 私奴라고 해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國家는 私家의 노비 지배에 개입할 수 있었던 반면에, 양반 사대부들은 天民인 노비야말로 교화의 대상이므로 노비가 강상명분의 질서에서 아래에 위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요어 : 奴婢, 天民, 綱常名分論, 奴婢政策, 士大夫, 性理學

학 번: 2018-21981

次 例

1.	序言	• 1
2.	'奴婢-天民' 認識의 成立과 그 背景	. 5
3.	奴婢制 認識의 變化와 '東國奴婢之法'의 正當化	18
4.	'奴婢-天民' 認識의 兩面性과 奴婢 支配	27
5.	結 語	38
參	考文獻	41
Ak	ostract ·····	51

1. 序言

무신정변은 高麗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武臣들이 기왕의 지배층이었던 文閥貴族들을 몰아낸 데다 국왕까지 교체해가며 권력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고려 사회의 지배 질서는 흔들리고있었다. 특히나 신분 질서의 혼란이 두드러졌는데, 정변 과정에서 공로를인정받아 賤出임에도 높은 관직에 오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李義旼처럼최고 집정자가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1) 이후 元 간섭기에 이르기까지 권력자의 눈에 들어 奴婢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였다.2) 權貴・嬖幸의 家奴들은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 잇속을 채우기 위해 民을 침탈하기도 하는 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3) 신분에 맞지 않는 참람한 행동을 넘어서, 무신정변 이후로 노비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키면서 체제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였으니.4) 12~13세기를 거치면서 高麗의 지배체제는 와해의 국면에 들어서고

¹⁾ 玉工과 官妓 사이에서 태어난 曹元正은 무신정변 때에 李義方을 도운 공로로 장 군에 올랐고 벼슬이 工部尚書에 이르렀다. (『高麗史』권128 列傳41 反逆 曹元正) 李義旼은 어머니가 玉靈寺의 婢였지만, 무신정변에 참여하여 장군에 올랐으며 慶大升에 이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高麗史』권128 列傳41 反逆 李義旼)

²⁾ 崔竩가 李公柱 등과 같은 家奴에게 관직을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高麗史』권 75 志29 選擧3 銓注 凡限職 고종 45년) 新安公 王佺의 家奴였던 康允紹는 몽골 어가 유창하여 元宗을 총애를 받아 장군 벼슬에 올랐고 훗날 벼슬이 判三司事에 이르렀다.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 康允紹)

³⁾ 鄭仲夫의 家奴들이 방자하게 행동하였던 사례, 印侯의 家奴가 백성을 죽이고 그소를 빼앗은 사례 등이 있다.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 印侯, 『高麗史』권128 列傳41 反逆 鄭仲夫)

⁴⁾ 노비 반란의 사례로는 全州 官奴의 반란(『高麗史』권20 世家20 명종 12년 3월), 壽昌宮 노비들의 반란(『高麗史』권129 列傳42 反逆 崔忠獻), 충주 관노의 난(『高麗史節要』권16 고종 19년 1월), 晉州 公·私奴婢의 난(『高麗史節要』권14 신종 3년 4월), 萬積의 난(『高麗史』권129 列傳42 反逆 崔忠獻), 家僮들의 習戰 사건(『高麗史節要』권14 신종 6년 4월), 密城 관노의 난과 雲門賊에 대한 가담(『高麗史』권21 世家21 신종 3년 5월), 御史臺 皂隸의 난(『高麗史』권103 列傳16 諸臣李子晟), 崇謙・功德의 난과 三別抄 반란에 대한 가담 모의(『高麗史』권27 世家27 원종 12년 1월) 등이 있다.

있었다.

노비층의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제의 동요 현상은 그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고,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체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 노비의 반란과 家奴의 전횡과 같은 이 시기 노비 문제는 노비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였다는 점에서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5) 이러한 시각은 이후연구자들이 신분제의 동요 현상을 새로운 사회를 豫備하는 발전적 요소로 평가할 단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 고려후기 노비 문제는 그에 대한 개혁론 및 조선왕조 창업 이후 國家가 노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지배층의 새로운 노비제 인식이 정돈되는 과정과 함께 논의되었다. 이들 연구는 고려후기 노비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려말 노비제 개혁론을 계승한 조선초기 노비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상황과 해결 방안을 인과관계 속에서 논의하였고,6) 조선초기 지배층이 보인 奴婢觀의 특징을 왕조 교체의 역사적 의의와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新王朝에 걸맞은 새로운 지배 논리가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다.7) 이처럼 왕조 교체를 전후한 시기에 걸친 각각의주제들이 고려후기 노비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됨에 따라, 이 시기 노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노비 문제를 포함한 고려후기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 이념은 성리학이었고, 그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 조선왕조의 창업이 있었다.8) 따라서 고려후기 성리학적 개혁론과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개혁운동, 뒤이은 조선왕조의 창업 및 문물제도의 정비는 성리학 사상을 매개로 하여 연속적·계기적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곧 고려후기 사대부 세력들이 그들의 思想과 眼目에서 당시의 사회 문제와 시대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⁵⁾ 변태성、「萬積의 亂 發生의 社會的 素地」、『史學研究』4, 1959.

⁶⁾ 박진훈. 「여말선초 노비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⁷⁾ 최이돈, 「조선초기 賤人天民論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57, 2011.

⁸⁾ 이경식,「朝鮮 建國의 性格問題」,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건국』, 혜안, 2005 참조.

맞는 처방으로서 어떠한 개혁론을 내세우고 있었는지, 또한 그들의 개혁운동이 왕조 교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지배층이 된 사대부세력이 무엇을 지향하였고 새로운 지배 논리의 바탕 위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지는 인과관계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전기에 이르면 성리학적 강상명분론을 통해 지배층의 노비 지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가 성립되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9) 그런데 조선전기지배층이 자신들의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한 성리학의 강상명분론이 고려후기 노비제 문제 및 그에 대한 성리학적 개혁론, 麗末鮮初지배층의 노비제 인식 변화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려후기 사대부 세력이당시 노비 문제의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그에 대한 그들의 노비제개혁론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었고, 개혁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여말선초 지배층의 노비제 인식은 어떠하였는지를 인과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본고는 '奴婢-天民'인식, 곧 奴婢를 하늘이 낸 백성(天民)으로 보는 인식이 고려 말에 이르러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奴婢-天民 인식은 성리학적 개혁론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고 여말선초 이래 지배층에게서 보이는 독특한 노비 인식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연구는 왕조 교체 과정에서 지배층이 노비를 天民으로 보는 인식이 성립함에 따라 朝鮮 國家가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비를 국가의 公民으로 대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0)

본고에서는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비를 국가의 公民으로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 또한 여말선초 노비제 인식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비제 인식의 두 측면에 주목하여, 충숙왕 후8년(1339) 監察司의 榜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비 문제의 실태와 그에 대한 元 간섭기

⁹⁾ 지승종. 『朝鮮前期 奴婢 身分 硏究』, 일조각, 1995.

¹⁰⁾ 최이돈, 앞의 논문, 2011.

儒者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고려 말 奴婢-天民 인식이 성립하는 배경을 『高麗史』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奴婢-天民 인식이 이후 조선의 지배층이 綱常名分論을 통해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實錄』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계획한 작업은 고려후기 사회문제로부터 성리학 사상에 입각한 개혁론이 대두하고 개혁운동의 결과로서 조선왕조가 창업되는 과정, 새로운 왕조가문물제도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노비 문제의 측면에서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11)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숙왕 후8년 5월.

2. '奴婢-天民' 認識의 成立과 그 背景

충숙왕 후8년(1339) 5월 監察司는 牓(榜)을 붙여, 禮制·淫祀·寺院·稅制·奴婢 등 당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禁令을 公表하였다. 『高麗史』刑法志와 食貨志에 보이는 12개의 금령 가운데, 노비 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12) 첫째, 各戶 노비의 役이 매우 고되기에 긍휼히 여겨야 함에도 질병 구완도 하지 않고 죽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니이제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중한 법으로 논한다. 둘째, 公私賤口가 城中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불허한다.13) 두 개 조항이 보여주는 노비 문제의 실태는 서로 상반된다. 苦役을 지고서 주인으로부터 적절한 구호도받지 못하는 노비가 있는가 하면, 城中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노비도 나타나다.

당시는 충숙왕 후8년 3월 癸未에 국왕이 薨逝한 이후로 충혜왕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고, 元의 승인을 얻어 왕위를 계승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14) 그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監察司의 禁令은 元 간섭기여러 국왕들이 발표한 개혁교서들과는 달리, 감찰사의 관원들이 주도하여 마련한 조치들이었다.15)

당시 감찰사의 관원들 가운데서는 柳甫發, 李達尊, 李公遂, 崔宰 등이 확인된다.16) 이 중 柳甫發은 충숙왕 후8년 봄에 監察執義가 되었지만 이

¹²⁾ 國喪, 新舊 官吏의 迎送, 巫覡, 寺院 住持의 축재, 婦女의 행실, 僧侶의 행실, 士大夫의 喪制에 관한 7개 조항과 노비 문제에 관한 2개 조항은 刑法志 禁令에 있고, 貢物 수납 관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1개 조항은 刑法志 職制에 있다. 이외에 貢物 납부 과정에서의 牟利 행위와 鹽政에 관한 2개 조항은 식화지에 있다. (『高麗史』권78 志32 食貨1 貢賦, 『高麗史』권78 志33 食貨2 鹽法, 『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禁令,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奴婢)

^{13)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숙왕 후8년 5월.

^{&#}x27;一 各戶奴婢 役之甚苦 在所矜恤 或有病 不肯醫治 弃諸道路 死又不埋 轉相曳弃 肉餧群狗 誠爲可憐 今後 以重法論. … 一 公私賤口 並不許城中乘馬.'

^{14) 『}高麗史』 권36 世家36 충혜왕 후 복위년 5월, 6월, 9월, 11월.

¹⁵⁾ 김형수, 「충숙왕 후8년(1339) 監察司 榜과 忠惠王의 復位」, 『한국중세사연구』 11, 2001, pp.115-118.

등해 사망한 인물이다.17) 李達尊은 李穀의 座主인 李齊賢의 아들로 白頤 正의 사위이기도 하다. 李達尊도 柳甫發이 사망한 것과 같은 해인 충혜왕 후1년(1340) 6월에 28세로 사망하였다. 당시 아버지 李齊賢은 文生李穀에게 '우리 아들과 함께 놀아서 사람됨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李穀이) 墓表를 지어야'하겠다고 했을 만큼 李達尊과 李穀은 친밀한 관계였다.18) 李公遂는 安軸과 金永暾19)이 座主였던 충혜왕 후1년(1340)의 과거에서 장원급제했는데, 당시 郎將 겸 監察糾正이었기 때문에 충숙왕 후8년에도 감찰사에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0) 崔宰는 충숙왕 복위연간의 말기에 監察持平으로 임명된 인물로, 충목왕 이후로는 整治都監 判官, 典法司의 正郎 등과 같은 臺官 및 法官을 두루 거치며 폐정개혁에 참여하였다.21)

柳甫發과 崔宰의 행적을 기록한 墓誌銘에서는 그들이 監察司 관원이었다는 경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²²⁾ 墓誌銘에서 감찰사 경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臺官의 직책이 망자가 생전에 가졌던 훌륭한 성품을 설명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

¹⁶⁾ 네 사람 이외에 崔瀣(1287-1340)의 동생인 崔溜도 충숙왕 후8년 감찰사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庚辰年(충혜왕 후 복위년, 1340년)에 崔瀣가 사망하였을 때에, 崔溜가 李穀을 찾아와 묘지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는데, 당시崔溜는 監察糾正이었다. (김용선,『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pp.514-516, 崔瀣墓誌銘)

¹⁷⁾ 김용선, 위의 책, pp.516-517, 柳甫發墓誌銘. (이하「柳甫發墓誌銘」)

¹⁸⁾ 김용선, 위의 책, pp.517-519, 李達尊墓誌銘.

^{19) 『}高麗史』에는 金永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충혜왕 후 복위년(1340년)에 知貢 擧로서 李公遂를 試取하였다는 내용, 충목왕 3년(1347)에 整治都監에서 활동하 였던 내용 등이 남아 있다. (『高麗史』 권37 世家37 충목왕 3년 2월, 『高麗史』 권73 志27 選擧1 충혜왕 후 元年) 여기서는 墓誌銘의 표기인 金永暾을 따른다. (김용선, 앞의 책, pp.538-540, 金永暾墓誌銘)

²⁰⁾ 김용선, 위의 책, pp.570-574, 李公遂墓誌銘.

²¹⁾ 김용선, 위의 책, pp.595-598, 崔宰墓誌銘. (이하「崔宰墓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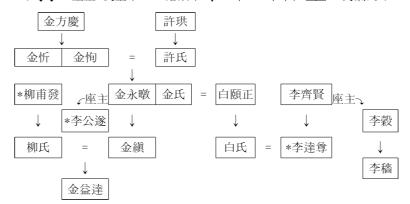
²²⁾ 충숙왕이 이들을 감찰사 관원에 임명하면서 "그(柳甫發)를 장차 크게 쓰려고 시험 삼아 納言의 임무와 風紀의 직책을 겸하게 하였다"고 한 것이나 "내가 본래 그 아비(崔宰의 아버지 崔得枰)가 풍모와 법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사람(崔宰)을 가볍게 쓸 수 없다"고 한 내용이 그 사례다. (「柳甫發墓誌銘」,「崔宰墓誌銘」)

른 한편, 柳甫發과 崔宰가 모두 충숙왕 사망 직전에 감찰사 관원에 임명되었고, 국왕이 사망한 이후에 관원들이 주도적으로 금령을 작성-발표하였던 것이 그들의 관직 경력에서 의미 있는 사실인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독특한 점은 감찰사 관원으로 확인되는 네 사람의 墓誌銘을 모두 李穀·李穡 부자가 지었다는 것이다. 일찍이 墓誌銘의 撰者가 李穀·李穡 부자라는 점으로부터, 감찰사 관원들이 儒者로서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금령을 공표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23) 李穀·李穡 부자가 墓誌銘의 撰者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들과 감찰사 관원들의 밀접한 관계 또한 시사적이다. 충혜왕 이후 臺官 및 法官으로서 폐정개혁에 참여한 것이확인되는 崔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충목왕 때 整治都監 관원으로 폐정개혁에 참여하였던 金永暾을 중심으로 한 혼맥과 座主-文生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24) 이로부터 이들이 李穀·李穡 부자와 같은 儒者로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

柳甫發, 李公遂, 李達尊의 관계도 (*표시)

(¬ ∠: 座主-文生 / =: 婚姻 / ↓: 부모-자녀 / □□: 同氣間)



²³⁾ 김형수, 앞의 논문, p.117.

²⁴⁾ 아래 관계도에서 인물들의 혼인 관계는 「金恂墓誌銘」(許珙의 딸과 金恂의 혼인, 金恂의 딸과 白頤正의 혼인), 「金永暾墓誌銘」(柳甫發의 딸과 金縝의 혼인), 「李齊賢墓誌銘」(白頤正의 딸과 李達尊의 혼인) 등을 참고한 것이다. (김용선, 앞의 책, pp.439-442, 金恂墓誌銘, pp.538-540, 金永暾墓誌銘, pp.587-592, 李齊賢墓誌銘)

다. 또한 감찰사의 금령은 충숙왕이 사망한 이후의 권력 공백 상태에서 소속 관원들이 주도하여 작성-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금령의 내용으로부 터 이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巫覡 배척에 대한 금령²⁵⁾부터 살펴보면, 巫覡은 '귀신의 말을 의탁하여 禍福을 내세워 惑世誣民하는 것'으로 바른 풍속으로 해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도성 이외의 지역에서도 儒者들로부터 배척의 대상이되었다.²⁶⁾ 사원 주지의 축재, 사원을 방문하는 婦女의 행실, 閱里에서 亂行勸化하는 승려와 관련된 금령²⁷⁾ 또한 불교 사원이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폐단과 풍속을 해치는 승려들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불교의 기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불교가 일으키는 폐단 정도를 시정하고자했던 李穡을 비롯한 사대부들의 주장과 상통한다.²⁸⁾

士大夫의 喪制와 관련한 금령²⁹⁾은 代守 풍습에 대한 규제 조치였다. 代守는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분묘 옆에 廬幕을 짓고 돌보는 일을 喪主가 하지 않고 家奴가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³⁰⁾ 노비들이 免賤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³¹⁾ 감찰사 관원들과 밀접한 관계였

^{25)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숙왕 후8년 5월.

^{&#}x27;一 巫覡之輩 妖言惑衆 士大夫家 歌舞祀神 汙染莫甚. 舊制 巫覡不得居城內 仰各部 盡行推刷 黜諸城外.'

^{26) 『}高麗史』 2105 列傳18 諸臣 安珦.

^{&#}x27;忠烈元年 出爲尚州判官. 時有女巫三人 奉妖神惑衆. 自陝州 歷行郡縣 所至作人 聲呼空中 隱隱若喝道. 聞者奔走 設祭莫敢後 雖守令亦然. 至尚 珦杖而械之 巫托神 言 怵以禍福. 尚人皆懼 珦不爲動. 後數日 巫乞哀乃放 其妖遂絶.'

^{27)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숙왕 후8년 5월.

^{&#}x27;一 近年禪教寺院住持 利其土生 專事爭奪 以致隳壞寺宇. 甚者 犯奸作穢 曾莫之恥 今後禁理.'

^{&#}x27;一 城中婦女 無尊卑老少 結爲香徒 設齋點燈 群往山寺 私於僧人者 閒或有之. 其齊民 罪坐其子 兩班之家 罪坐其夫.'

^{&#}x27;一 僧人不許雜居閭里 及賫願文 亂行勸化.'

²⁸⁾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 연구』, 일조각, 1999, pp.68-72.

^{29)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충숙왕 후8년 5월.

^{&#}x27;一 古者 葬先遠日 所以禮葬 今士大夫 例用三日葬 殊非禮典. 又有不躬廬墓 以奴 代之 焉得爲孝? 並宜禁之 犯者科罪.'

³⁰⁾ 도현철, 앞의 책, p.95.

^{31)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x27;放良奴婢 年代漸遠 則必輕侮本主 今或代本主水路赴戰 或廬墓三年者 其主告于攸

던 李穀은 代守 풍습 자체만이 아니라, 家奴들이 서로 다투어 代守를 하고자 하는 풍조까지도 비판한 바 있다.32) 李穀이 代守를 비판한 것은 충숙왕 후7년(1338) 8월 前 監察持平 朴允文이 母親喪을 당하였을 때에 여막을 짓고 禮制를 마친 것을 높이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李穀이 「寄朴持平詩序」에서 '前 監察持平'이라고 칭한 朴允文과 그의 행적이 충숙왕 후8년 5월의 금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朴允文이 속해 있던 감찰사의 금령이 추구한 바와 李穀이 가진 문제의식이 공통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곧 이 시기 儒者들이 성리학의 실천윤리에 기초한 禮制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었고, 士大夫의 喪制와 관련한 감찰사의금령은 代守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그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감찰사의 금령은 李穀 등 儒者들이 당시의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採弊를 추구하고 있던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장의 書頭에서 제시한 금령의 두 조항은 고려후기 노비 문제의 실태를 당시의 儒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다만 監察司에서 활동한 柳甫發, 李達尊, 李公遂, 崔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사료는 虛疏한 형편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나그들과 가까웠던 李穀 등 儒者들이 남긴 기록으로부터, 금령의 두 조항이 담은 의미와 감찰사 관원들을 비롯한 儒者들이 지향한 바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다.

李穀 같은 儒者들은 權貴·土豪의 침탈로 인해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보고 있었다. 李穀은 漢陽 參軍 鄭永世를 전송하는 글에서 그를 격려하면서, 미관말직의 參軍으로서 당시의 '深弊'를 갑자기 개혁할

司考閱其功 年過四十者 放許免賤 若有罵本主 又與本主親族 相抗者 還賤役使.'

³²⁾ 李穀(1298-1351),『稼亭集』 권9 寄朴持平詩序

^{&#}x27;本國之制 守親墓三年 許旌其門 不問平日所爲爲何如也. 近世士大夫多令家奴代之終且私爲復其身 任其所之 故爲奴隷者爭欲爲之. 夫小人之急於利 猶君子之重於義. 人子之念親 豈不如奴隷之愛主乎. 顧牽於習俗不爲之耳.'

수는 없으나 仁을 실천하고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다면 관직의 高下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3) 이처럼 당시 儒者들은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고 塗炭에 빠진 民生을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34)

당시의 사회경제적 폐단 가운데 하나는 지배층이 권세를 이용하여 壓良爲賤이나 文契 조작,奪取 등을 통해 자기의 소유 노비를 증식하는 것이었다.35) 李齊賢 등과 교유하던 安軸이 당시의 이런 문제에 대해, '내평생에 칭송받을 만한 일이 없지만, 네 번 士師[法官]가 되어 무릇 民으로서 억압받아 奴婢가 된 자는 반드시 審理하여 良人이 되게 하였다'고말할 정도였다.36) 특히나 충숙왕 연간을 전후하여 權貴나 嬖幸들에 의한 폐단은 더욱 극심하였다.37) 申靑 같은 인물은 人戶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남의 田民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壓良爲賤을 자행하고도 典法判書安軸, 監察執義 尹奕, (監察)持平 李敏 등이 正道를 지키면서 자기 말을들어주지 않자 그들을 巡軍에 가두기까지 하였다.38) 이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 고역과 질병에 시달림에도 주인에게 버림받는

³³⁾ 李穀(1298-1351). 『稼亭集』 권8 送鄭參軍序

^{&#}x27;自國家多故 事異古先 廉耻道喪而上下交征利 豪家得以兼并 酷吏因而掊克 地無立錐之閑 室有懸罄之嘆 爲守令者 坐視莫敢言 厲民自奉而已 民之困且無聊 未有甚於此時也。'

³⁴⁾ 이석규,「麗末鮮初 新興儒臣의 民에 대한 인식」,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pp.26-32.

³⁵⁾ 배상현, 「高麗後期 農場奴婢의 形成과 社會經濟的 地位」, 『역사와 경계』5, 1991, pp.8-12.

^{36) 『}高麗史』 过109 列傳22 諸臣 安軸.

^{37) 『}高麗史』 권84 志39 刑法1 職制 충렬왕 34년 忠宣王 復位 教書, 『高麗史』 권 123 列傳36 嬖幸1 李英柱, 『高麗史』 권124 列傳37 嬖幸2 全英甫.

^{38) 『}高麗史』 过124 列傳37 嬖幸2 申青.

尹奕은 충숙왕 17년(1330) 4월 密直使에 임명된 바 있다. (『高麗史節要』권 24 충숙왕 17년 4월)「吳潛墓誌銘」에 따르면, 충숙왕 후5년(1336) 9월에는 前 僉議 政堂文學 右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였다. 관직의 高下를 따져보았을 때, 충숙왕 후8년에는 監察執義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김용선, 앞의 책, 2001, pp.489-491, 吳蠶墓誌銘)

李敏은 충목왕 3년(1347) 田民을 조사하고 按廉存撫使를 겸하는 임무를 띠고 각도에 파견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충숙왕 후8년 감찰사 榜과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高麗史』권37 世家37 충목왕 3년 2월)

노비에 관한 금령은 權貴나 嬖幸들이 노비를 증식하고도 제대로 救護하지 않는 폐단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權貴들에 의해 야기된 노비 문제의 실태는 權門의 家奴들이 전횡을 일삼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39) 감찰사의 금령이 규제하고자 했던 노비의 '城中乘馬'는 노비가 권세를 등에 업고 지배층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말한다. 결국 그에 대한 금령은 노비의 過濫한 행동을 억제하고 신분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인데, 배후에서 노비를 앞세워 民을 침탈하는 등 전횡을일삼는 權貴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이었다.40)같은 충숙왕 때 公私奴子가 (자신이) 南班이라고 속이고서 良家의 婦女를 유인하여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 또한 노비의 過濫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그 목적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41)

이처럼 노비 문제와 관련한 감찰사의 두 금령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權貴가 노비를 과도하게 증식해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문제와權貴의 家奴가 狐假虎威하는 폐단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賤口의 城中乘馬'를 규제하고 노비에 대한 적절한 救護를 요구하는 이 같은 금령은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했던 만큼, 私民化된 良人 농민을 辨正하는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충혜왕의 복위 과정에서 일어난 曺頔의 난과 충혜왕의 亂行으로 인해, 儒者들이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정도 수준의 금령조차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42)

³⁹⁾ 무신정권 이래로 權貴의 家奴들이 관직에 오르거나 狐假虎威하면서 전횡을 일삼은 사례로, 崔竩의 家奴 李公柱,新安公 王佺의 家奴였던 康允紹가 관직에 오른 것이나 印侯의 家奴가 전횡을 일삼은 例가 있다. (『高麗史』권75 志29 選擧3 銓注 凡限職 고종 45년,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 印侯, 『高麗史』권123 列傳36 嬖幸 康允紹)

⁴⁰⁾ 무신정권 이래로 家奴들이 주인의 권세를 이용하여 民을 침탈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지배층의 재산을 강탈한 사례로, 廉興邦의 家奴 李光이 密直副使 趙胖의 토지를 빼앗은 것, 權謙의 家奴가 남의 아내와 말을 빼앗은 例가 있다. (『高麗史』 권126 列傳39 姦臣 廉興邦, 『高麗史』 권131 列傳44 反逆 權謙)

^{41) 『}高麗史』 권84 志38 刑法 戶婚 충숙왕 12년 10월.

⁴²⁾ 김형수, 앞의 논문, pp.118-121 참조.

그렇지만 감찰사 관원들을 비롯한 원 간섭기 儒臣들의 문제의식은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들에게서 더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43)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 이해의 진전을 토대로, 국가의 문제를 민생의 피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 경세의식을 현실 정치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었다.44) 天理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성리학 이해는 天人 관계에 대한 논의와 불가분이었다. 특히나 공양왕의 즉위가 天命의회복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었기에 공양왕 때에는 天命・災異・天人 관계 등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수 있었다.45) 이 시기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災異를 근거로 하여 공양왕에게 君主修身, 斥佛 등을 요구하였다.46) 또한 天人 관계를 근거로 하여 인사 행정의 정상화, 상벌의 공정한 집행 등을 통해서 당시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47)

신진사대부들의 경세의식은 자신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同類 인 民=天民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관련되어 있었다.⁴⁸⁾ 그러한

⁴³⁾ 尹紹宗의 祖父 尹澤은 충숙왕 7년(1320)에 李齊賢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監察司의 금령이 공표된 충숙왕 후8년(1339)에는 諫官인 右代言으로서 成均試를 主掌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최초로『大學衍義』를 進講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급진파 사대부의 일원이었던 손자 尹紹宗 또한 공양왕에게『大學衍義』의 진강을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김용선, 앞의 책, pp.576-579, 尹澤墓誌銘, 『高麗史』 권120 列傳33 諸臣 尹紹宗) 尹澤-尹紹宗 가문이 성리학적 君主修身論의 관점을 家學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변동명,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 研究』, 일조각, 1995, pp.180-182)

감찰사 관원들의 가계 및 좌주-문생관계뿐만 아니라, 尹澤의 家系 및 家學 계승은 충숙왕 후8년 감찰사의 榜과 같은 문제의식이 고려 최말기 신진사대부의 개혁론에 연결되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해준다.

⁴⁴⁾ 이석규,「麗末鮮初 新興儒臣의 民에 대한 인식」,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pp.32-38.

^{45) 『}高麗史』 246 世家46 恭讓王 史臣 贊, 『高麗史』 2116 列傳29 諸臣 南間.

⁴⁶⁾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pp.307-309.

^{47) 『}高麗史』 过118 列傳31 諸臣 趙浚 列傳.

^{&#}x27;願殿下 上畏皇天之鑑臨 下畏億逃之瞻仰 賞一人 則恐不合於上帝福善之心 罰一人 則恐不合於上帝禍淫之鑒 衆悅而後賞 衆弃而後刑 弊袴必藏一笑必惜 命一官 則曰 斯人也果君子而可以理天工可以養天民而天不罪我乎.'

鄭道傳(1342-1398), 『三峯集』 권3「上恭讓王疏」.

^{&#}x27;天人之際 間不容髮 吉凶災祥 各以類應 … 子曰 天心仁愛人君 先出災異 以譴告之 欲其恐懼修省之也 伏望殿下 常用人刑人之際 不論其親疎貴賤 一視其功罪之有無 處之各當其可 使不相陵 則任用公而賞罰正 人事得而天道順矣.'

경세의식은 民生의 어려움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현실 정치에서의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표출되었다. 특히나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당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이자 民生과 직결된 문제였던 田民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들이 추진한 私田 혁과는 고려후기이래 계속된 '田民辨正'이라는 개혁 방침과는 달리, 토지 문제와 人身 지배의 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49) 원종 10년(1269) 이래 충렬왕, 공민왕, 우왕대에 걸쳐 여러 차례 田民辨正都監이설치된 것은 田民 문제를 아울러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지만 계속된 설치 자체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지지부진함을 보여주는 바이기도했다. 따라서 私田 혁과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한 것이었고 토지문제부터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있었다. 이에따라 공양왕 2년(1390) 9월 公私田籍을 모두 소각하였고 공양왕 3년(1391) 5월에는 科田法이 실시되었다.50)

토지 문제의 다른 한편에서 私民化-祖業奴婢化된 良人 농민을 辨正하려는 조치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공양왕 2년 7월 兩班戶口의 정비와 함께 戶籍에 付籍되지 않은 노비(戶籍不付奴婢)를 屬公하는 조치가都堂에서 논의되어 임금이 그 조치의 실시를 가납하였다.51) 비록'然竟未

^{48) 『}高麗史』 过120 列傳33 諸臣 尹紹宗.

^{&#}x27;臣聞 養天民者興 殘天民者亡. 是以人主受天命而立天位 則必上順天心 以養天民如父母之愛赤子 然後民心附而天命固焉.'

신진사대부들의 경세의식 및 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석규, 앞의 논문,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⁴⁹⁾ 급진파 사대부들이 田民에 걸친 사회경제적 문제를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私田 문제만이 타결된 상황에서 조선이 창업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진훈, 「고려후기 전민변정과 조선초기 노비 정책의 의의와 한계」, 『역사비평』122, 2018.)

^{50) 『}高麗史』 2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51)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戶口 공양왕 2년 7월.

^{&#}x27;恭讓王 二年 七月 都堂 啓 舊制 兩班戶口 必於三年一成籍 一件納於官 一件藏於家 各於戶籍內 戶主世系及同居子息兄弟姪壻之族派 至於奴婢 所傳宗派所生名歲奴妻婢夫之良賤 一皆備錄 易以考閱 近年以來 戶籍法廢 不唯兩班世系之難尋 或壓良爲賤 或以賤從良 遂致訟獄盈庭案牘紛紜 願自今做舊制施行 其無戶籍者 不許出告身立朝 且戶籍不付奴婢 一皆屬公 王納之 然竟未能行.'

能行'이라고 하여 그 실행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 양반 호적 정리는 지배층을 고정하고 그 아래 노비층을 겸하여 정리함으로써 신분제문제를 수습하려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52)

科田法 실시 이후인 공양왕 3년 10월에는 郎舍가 "私田의 폐단은 개혁하였으나 民口를 소유하는 데에 제한이 없고 私財라고 일컬으며 쟁송하는"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53) 이처럼 科田法 이후 남아 있는 노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혁론이 본격화되고 있었다.『高麗史』刑 法志 奴婢條에도 공양왕 3년에 郎舍가 올린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刑法志 訴訟條의 것과 같은 맥락이기에 같은 10월의 것으로 추정된다.

恭讓王 三年 郎舍上疎曰 … **奴婢 雖賤亦天民也**. 例論財物恬然買賣或以牛馬易之 一匹之馬 給二三口 猶未足償 則以牛馬爲重於人命也. 昔 廐焚孔子曰 傷人乎 不問馬 則聖人之貴人賤畜如此 安有以人易馬之理乎.54)

위 郞舍의 상소에서는 '노비가 비록 賤하나 또한 天民'이라는 논리로부터 牛馬보다 노비의 값이 헐한 상황을 비판하고, 『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聖人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를 밝혔다.55) 노비를 하늘이 낸 백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곧 奴婢-天民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양왕 3년 郞舍의 상소에 나타난 개혁 주장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래에 奔競이 풍조를 이루어 자손이 있는 자도 祖業奴婢를 다른 사람에 줘버려 자손의 원망을 사므로, 祖業奴婢는 자손 이외에 전 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위 인용문의 주장처럼 노비를 牛馬보다 헐한 값

⁵²⁾ 김광수, 「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兩班戶籍整理」, 『역사교육』35, 1984, p.47.

^{53)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訴訟.

^{&#}x27;恭讓王 三年 十月 郎舍 上疏 曰 殿下即位 首革私田之弊 明立差科 肅淸訟源 誠三 韓風俗之萬幸也 但有民口者 本無限際 又謂之私財 爭訟萬端 有甚於爭田之弊也.'

^{54) 『}高麗史』 285 志39 刑法2 奴婢.

^{55)『}論語』鄉黨篇'廐焚 子退朝 曰 傷人乎 不問馬.'

으로 바꾸고 있을뿐더러, 부처[寺院]에 뇌물을 바치고 복을 구하는 나쁜 풍속으로 인해 정작 노비를 상속받아야 할 자손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으 니 賣買와 施納을 모두 금지한다.56)

우선 노비를 뇌물로 바치고 관직을 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은 곧 노비를 뇌물로 받는 權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기에, 權貴들의 횡포로인한 사회문제를 비판하였던 元 간섭기 儒者들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57) 또한 國家가 노비의 상호 전수를 적극적으로 규제한 것은 노비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으로 和氣가 손상됨을 우려한 것으로, 이는성리학의 실천 윤리와 직결되는 바였다. 이처럼 郎舍의 상소는 원 간섭기 儒者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성리학 이해의 진전만큼이나 좀더구체화된 개혁 주장을 담고 있었다.

郞舍의 상소가 담고 있는 매매 규제 주장은 정작 노비를 상속받아야할 子孫들에게 祖上이 원망을 사게 되는 문제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牛馬보다 人命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李穀도「市肆說」에서 부모가 아이를, 남편이 아내를, 주인이 노비를 할값에 팔아버리는 것이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이라며 당시의 세태를 비판한 바 있었다.58) 결국 매매 규제 주장은 사람을 가축보다 못하게 취

^{56)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法讓王三年 郎舍上跪曰 比年以來 奔競成風 皆欲冒寵於權門 雖有子孫者 祖業人口 盡與他人. 故其子孫 益以窮迷 猶怨祖父之無德 則安有孝順之可稱者乎. … 世俗昏 迷 自作殃咎 納民於寺 以圖求福 若以佛爲正 則安有納略免禍之理乎. 然則 非惟未 蒙其福 徒自勞苦 貽患子孫耳. 伏惟殿下 幷察焉 祖業人口 不許孫外相傳. 雖無後者 養其夫婦中同宗者 相傳 其買賣之人 納寺之弊 幷行禁治 則豈無補於聖理之萬一乎. 從之

⁵⁷⁾ 奴婢辨正 등 급진파들의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權勢家들의 반발이 극심하였다. 이는 이미 私田이 혁파된 상황에서 노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온건파들은 刑曹 都官을 통해서 노비 방역 금지를 골자로 한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鄭道傳 등 급진파들을 혈통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탄핵하였다. (박진훈, 「고려말 개혁파 사대부의 노비변정책 - 조준・정도 전계의 방안을 중심으로」, 『학림』19, 1998 참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급진파들의 노비제 개혁론이 權貴들의 전횡을 규제하고 그들을 견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⁵⁸⁾ 李穀(1298-1351),『稼亭集』 권7 說.

^{&#}x27;于今又見人肆焉 自去年水旱民無食 强者為盜賊 弱者皆流離 無所於餬口 父母鬻兒

급하여 헐값에 매매하는 것, 곧 매매로 인한 폐단뿐만 아니라 매매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위 인용문처럼 매매 규제 주장의 근거로「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노비를 天民이라고 한 것 또한 노비가 다른 民人들과 마찬가지로 養育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곧 奴婢-天民 인식은 충숙왕 후8년 감찰사의 금령 가운데 '고역과 질병에 시달림에도 주인에게 버림받는 노비'에 관한 조항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만 그 문제의식은 감찰사의 금령보다 좀더 분명한 案으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 구체화된 案이란 개별-구체적인 사례들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토지문제에서의 科田法과 짝하여 良人農民을 辨正하고 국역 부담층을확보하고자 했던 포괄적인 개혁안을 말한다.

그러나 감찰사의 금령은 '城中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노비를 규제'해야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었다. 郎舍의 상소가 노비도 또한 하늘이 낸백성이기에 말[馬]보다 값이 헐할 수는 없고 노비의 人命도 중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비록 賤하지만'이라고하여 노비가 奪卑貴賤의 질서에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공양왕 때의 개혁 주장에는 帝王-后妃와 같은 옷을 입은 노비가 횡행하는 상황을 문제시하는 中郞將 房士良의 上疏나, 宮門의 단속이 엄하지않다고 하면서 大小官員의 伴倘과 奴婢가 함부로 출입하는 폐단을 지적하는 憲司의 上疏가 있다.59) 곧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규제하고 흔들리는 신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노비를 民으로서 잘 養育해야 하는 한편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夫鬻其婦 主鬻其奴 列於市賤其估 曾犬豕之不如,

^{59)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공양왕 3년 3월.

^{&#}x27;三年 三月 中郎將 房士良 上疎 一 書云 不貴異物賤用物 民乃足 我朝 只用土宜細 紵麻布 而能多歷年所上下饒足. 今也 無貴無賤 爭貿異土之物 路多帝服之奴 巷遍后 飾之婢 願自今 土庶工商賤隷 一禁紗羅綾段之服 金銀珠玉之飾 以弛奢風 以嚴貴賤.'『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공양왕 4년 3월.

^{&#}x27;三月 憲司 上疎 言時事 一 擅入宮殿門 旣有其律 見今 宮門不嚴 大小員將引伴倘奴隷 無時出入 甚至雜亂 或有司門者阻當 反致陵辱 無有懲禁.'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元 간섭기 儒者들에 이어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에서도 一體로 존재하였다.60) 이들의 노비제 개혁론은 토지 문제가 科田法으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남은 人身-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장이었으며, 天民이라는 소재는 天人 관계가 주목받던 당시 사상계의 동향과 天民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신진사대부들의 경세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한 奴婢-天民 인식은 노비제 개혁론을 담은 공양왕 3년 郎舍의 상소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리학 사상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왕조의 노비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⁶⁰⁾ 노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天民이라는 소재로 잘 통합되어 있던 사정은, 民에 대한 신진사대부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신진사대부들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君爲民天', 더 나아가 '民爲君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民을 同胞, 同類로 여겼다. 그러나 民을 사대부와 완전히 동일시한 것은 아니었고 上下・尊卑・貴賤의 구분이 있다고 보았으며 民을 官人에 의한 교화와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석규, 앞의 논문,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pp.39-47.)

3. 奴婢制 認識의 變化와 '東國奴婢之法'의 正當化

郎舍의 상소와 같이, 과전법이 실시된 이후 급진파들은 奴婢辨正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양왕 3년(1391) 9월에 이르면, 奴婢辨正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현안들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 온건파는 鄭道傳을 탄핵하여 귀향-유배에 처하였으며61) 공양왕 4년(1392) 4월에는 金震陽 등이 趙浚・南誾・尹紹宗 등을 탄핵하고 귀양지에 가 있던 鄭道傳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62)

온건파가 鄭道傳을 논죄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정도전이 賤系 출신으로 관직에 올라 本主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다.⁶³⁾ 출신 성분에 대한 공격은 '賤類로서 父母 중 어느 한쪽이 賤하면 곧 賤하게 되며 설사 그 상전이 해방시켜 양민이 되었다고 해도 그 소생인 자손들은 賤人이 되게하는' 高麗 在來의 奴婢觀에 의한 것이었다.⁶⁴⁾ 온건파의 노비제 개혁안자체가 奴婢辨正보다는 노비 放役 금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⁶⁵⁾ 이들의 정도전 탄핵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고, 그들이 내세운 노비제 개혁안과 整合을 이루는 주장이었다.

온건파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서도, 공양왕 4년 2월 人物推辨都監에서 급진파들의 개혁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奴婢決訟法을 제정하는 등 奴婢辨正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66) 공양왕 4년 4월에는 정몽주가 제

^{61) 『}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 3년 9월.

[『]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 3년 10월.

^{&#}x27;省憲交章 再論鄭道傳曰 道傳家風不正 派系未明 濫受大職 混淆朝廷. 請收告身及 功臣錄券 明正其罪. 王命收職牒錄券 移配羅州 其子津湛 亦皆廢爲庶人. 密直副使南 誾力不能救 稱疾自免.'

^{62) 『}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 4년 4월.

^{63) 『}高麗史』 권117 列傳30 諸臣 金震陽.

^{64) 『}高麗史』 권31 世家31 충렬왕 26년 10월.

一賤則賤의 신분 세습 원칙 및 노비의 免賤-放良을 경계하는 입장은 지배층의 純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⁶⁵⁾ 박진훈, 앞의 논문, 1998, pp.35-39.

^{66)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訴訟,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거되고 趙浚・鄭道傳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같은 달에 沈德符, 裴克廉의 건의로 人物推刷(辨)都監과 戶口成籍의 법을 혁과하였다.67) 이는 權勢家의 반발을 가져왔던 奴婢辨正을 중지함으로써 기존 정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68) 이로써 奴婢辨正이 중단되었고, 노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할 수 있다.69)

비록 奴婢辨正 자체는 중단되었지만, 奴婢-天民 인식으로 대표되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이 조선 초기 노비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들은 적지 않다. 태조 7년(1398) 노비 공정가격의 개정에 따라 奴婢價는 奴-婢를 막론하고 약 2~3배 높아졌다.70) "노비가 비록 賤하지만하늘이 낸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馬價에 비해 1/3~1/2에 불과한

刑法志 奴婢條에 기록된 人物推辨都監의 奴婢決訟法은 ① 良賤交婚 금지 및 그소생의 放良 ② 권세가에 대한 증여 및 佛堂·神祠에 대한 施納 금지 ③ 同宗之子 및 遺棄兒 收養의 경우에는 노비 상속 허용, 그를 꾸며내는 행위 금지 ④ 노비를 부린 값은 성종 5년의 공정가격에 따라 처리 ⑤ 노비를 산 자가 자손이 없으면 친척에게, 친척이 없으면 屬公 ⑥ 노비 放賣 금지 (飢寒·公私債의 경우에만 官에 보고하고서 매매 가능) ⑦ 合執・奪取・隱匿 등의 범죄에 대한 자진 是正・自首 독려를 규정하였다.

이외에 訴訟條에 기록된 奴婢決訟法은 ⑧ 노비 송사는 都監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私門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⑨ 不正直하거나 公事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를 담았다. 禁令條에 기록된 奴婢決訟法은 ⑩ 良賤不明者에 대한 처리 규정 ⑪ 證憑 文案에 대한 규정 ⑫ 私門에서의 쟁송 금지 조치 등을 담았다.

이상의 내용들 가운데 ②, ③, ⑥은 郞舍의 상소에 나타난 급진파 사대부들의 노비 정책 노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①, ②, ⑧ 등은 權貴에 의해 발생하는 노비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67) 『}高麗史節要』 권35 공양왕 4년 4월.

⁶⁸⁾ 박진훈, 앞의 논문, 1998, p.49.

⁶⁹⁾ 조선 태조 때 노비 판결을 잘못한 관리를 파면하면서, 국왕은 田制가 이미 바르 게 되었는데 유독 奴婢 한 가지 일 때문에 부모형제 사이에서 원망과 비방이 날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6월 15일 己未.

^{&#}x27;田制旣正 人心已定 獨奴婢一事 骨肉相殘 怨讟日興 君臣共議別立都監 使明辨眞僞.'

^{70)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6월 18일 壬戌.

^{&#}x27;刑曹都官上言 凡奴婢價 多不過五升布一百五十匹 馬價則至四五百匹 是重畜輕人 於理不順 願自今凡奴婢價 勿論男女 年十五以上四十以下者 四百匹 十四以下四十 一以上者 三百匹 論定買賣 永爲恒法 其在逃役價 則每一名一朔 五升布三匹 年月雖 多 不過其直. 上允之.'

것은 잘못이라고 했던 공양왕 3년 郞舍의 상소와 직결되는 개혁이었다.

곧 공식 가격의 변동은 奴婢-天民 인식에 기반을 두고서, 국가 정책상으로 "말(馬)보다 노비 人身의 가치를 높게 잡으려는"의지의 표현이었다. 奴-婢, 즉 성별간의 가격 차이를 없앴다는 것도 良人과 달리 母系를통해 소유권 및 소생의 系統을 판정하여 (소위'從母의 원칙') 婢의 가격을 奴보다 높게 잡는 관행이 人類가 아니라 마치 畜産과 비견됨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노비를 民-天民으로 대우하자는 것이 공정가격 개정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고려 말까지도 성종 5년(986)의 공정가격은 '다른 사람의 도망한 노비를 숨겨서 점유한 자'가 보상할 액수의 책정 기준이었다.71) 그런데 왕조 교체를 전후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조선초기 양반사대부의 농업경영에서 노비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상속과정을 거칠수록 개인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인노비를탈취・은닉하거나 良人을 壓良爲賤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그로 인한奴婢爭訟이 끊이지 않았다.72) 결국 조선 태조 7년의 공정가격 개정은 4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법적인 보상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었다. 설령 공정가격의 인상이 노비의 시중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부당하게 이용한 노비 노동력의 가치를 더 높이 책정하여 보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노비의 중요성이 제고된 사회변화를 반영한 조치로평가할 수 있다.

노비를 民-天民으로서 대우하기 위한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정종 2년(1400)에는 주인의 죄를 대신하여 노비들이 옥중에 갇히게 되는

^{71) 『}高麗史』 285 志39 刑法2 奴婢.

⁽成宗) 五年 七月 教 凡隱占人逃奴婢者 依律文 一日綃三尺例 日徵布三十尺 給本 主 日數雖多 毋過元直 奴 年十五以上 六十以下 直布百匹 十五以下 六十以上 五十 匹 婢 年十五以上 五十以下 百二十匹 十五以下 五十以上 六十匹."

^{&#}x27;四年 人物推辨都監 定奴婢決訟法 ··· 一 奴婢役價 依成王五年判 年月 雖多不過其 直 其容隱役使他人奴婢者 依律論罪.'

⁷²⁾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증보판 - 조선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240-244.

데, 서로 병에 전염되어서 원망을 부르며 和氣를 상하게 되니 徒役에만처하고 중죄인과 섞지 말라고 하였다.73) 세종조에는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노비의 頁을 면제하거나 篤疾・廢疾이 있는 여러 官司奴婢의 頁을 없애는 조치들이 있었다.74) 또한 출산 전후 京外의 官奴婢에게, 그리고 婢子의 남편에게 給暇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었다.75) 뿐만 아니라倭奴婢들의 경우에 국방상의 이유로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면서도, 撫育하지는 않고 무리하게 사역하여 도망을 치게 되면 그 官/主를 논죄하게 하였다.76) 京中의 大小各戶에서 병을 얻을 노비들을 活人院에서 거두어 救療하라는 지시도 있었다.77) 혹시나 병든 노비가 죽게 되면 그 집에서 棺을 갖추어 葬事를 치르게 하라는 지시도 함께 있었다는점에서, 세종의 이러한 傳旨는 충숙왕 후8년 監察司의 榜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노비제 개혁론과 그 일환이었던 奴婢-天民 인식은 노비에 대한 적절한 救護와 합당한 대우를 논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

^{73) 『}定宗實錄』 권5 정종 2년 7월 2일 乙丑.

^{74) 『}世宗實錄』 권11 세종 3년 2월 7일 庚子, 『世宗實錄』 권12 세종 3년 5월 20일 辛巳, 『世宗實錄』 권43 세종 11년 1월 20일 丁卯,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3월 6일 乙丑.

^{75) 『}世宗實錄』권32 세종 8년 4월 17일 庚辰, 『世宗實錄』권50 세종 12년 10 월 19일 丙戌, 『世宗實錄』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癸酉.

^{76) 『}世宗實錄』권11 세종 3년 4월 5일 丁酉, 『世宗實錄』권16 세종 4년 5월 16 일 壬申.

倭奴婢는 태종-세종 연간의 실록 기사에 주로 등장하는데, 金海에서 交易한 倭婢가 日本國王이 보낸 使者의 배로 도망치자 김해부사가 交隣의 뜻에 따라 돌려보낼 것을 청하자 倭使가 '我國本無私賤'이라고 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조정에서 倭奴婢 매매를 禁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태종조 司諫院에서 올린 시무책에서는 왜인들이 受職하여 궁정을 숙위하거나 노비로 매매되어 州郡에 늘어서 있는 것이 未便하다며 慶尙道에서만 그 수가 2천에 이른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주로 왜노비의 매매를 금지하자고 하거나 왜인들끼리 서로 交通하지 못하도록 궁벽한 곳에 두자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太宗實錄』권16 태종 8년 10월 21일 乙未, 『太宗實錄』권19 태종 10년 4월 8일 甲辰, 『世宗實錄』권4 세종 1년 7월 6일 己酉, 『世宗實錄』권35 세종 9년 1월 10일 己亥)

^{77) 『}世宗實錄』 권69 세종 17년 9월 1일 己巳.

[·]傳旨禮曹漢城府 京中大小各戶得病奴婢及京外丐乞之人 皆聚活人院救療 如有物故者 即令其家備棺以葬. 其丐乞之人 則官給棺葬之 仍立標置簿 以憑後考.

맞은편에서 綱常名分을 확립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실제로 조선초기의 노비 정책에도 그러한 조치들이 잇따랐다. 태조 7년(1398) 功을 세운 工商賤隷에게는 財貨로 賞을 줄 뿐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제기되어 임금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前朝[高麗] 말기에 工商賤隷가 높은 벼슬에 오르는 등, 인사행정이 문란했다는 것이었다.78) 정종 2년(1400)에는 門下府 郎舍의 상소를 계기로 工商賤隷가 京城에서 말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복색을 정하여 尊卑貴賤을 밝히도록 하였다.79) 이는 충숙왕 후8년 監察司의 榜, 공양왕 때 房士良의 개혁 주장과 직결되는 조치였다. 아울러 조선초기 국왕들이 내린赦宥令에는 謀反大逆, 父母에 대한 범죄 등과 함께 노비가 상전을 죽인 것은 예외로 하였다.80) 이로써 刑政의 운영에서 강상명분을 중하게 여김을 보이게 하였다.

이처럼 노비를 天民으로서 적절히 대우해야 하면서도 강상명분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말선초 노비제 인식의 두 측면은 고려후기 노비제 개혁론에서 비롯되어 조선초기 실제 노비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려후기개혁론과 조선초기 노비 정책 사이에는 고려 말 개혁운동의 소산인 조선왕조의 창업이 있었고 개혁과 왕조 창업의 공통된 이념은 성리학이었다.81) 일찍이 조선의 양반 지배층이 성리학의 강상명분론을 통해 노비지배를 정당화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82) 성리학은 윤리 규범이 天命에 근거한다고 보면서 그에 따라 天理를 가진 만물 사이에는 절대적인天分이 있다고 본다. 天分은 곧 넘어설 수 없는 상하질서를 말하며 이는곧 綱常으로 표현된다.83) 綱常에 따른 상하질서는 곧 교화의 주체-대상

^{78) 『}太祖實錄』 권15 태조 7년 11월 11일 癸未.

^{79) 『}定宗實錄』 권5 정종 2년 7월 25일 戊子.

^{80) 『}定宗實錄』 권3 정종 2년 2월 4일 己亥,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4월 6일 甲子,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6월 18일 乙亥,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5월 2일 庚戌, 『世宗實錄』 권67 세종 17년 2월 9일 辛亥.

⁸¹⁾ 이경식, 앞의 논문,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건국』, 혜안, 2005 참조.

⁸²⁾ 지승종, 앞의 책, 1995, 제3장 主奴關係와 奴婢統制 Ⅱ. 主奴關係의 이데올로 기 참조.

⁸³⁾ 류쩌화, 장현근 譯, 『중국정치사상사3』, 글항아리, 2019, 제6장 송대 리학의 정

사이에 규정되는 질서이기도 하다.

앞서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이 강상명분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과 조선 양반 지배층의 노비 지배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 성리학의 강상명분론을 그 매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高麗史』刑法志 奴婢條 序文에는 "東國에 奴婢가 있는 것은 風敎[敎化]에 도움이 되니 內外의 구별을 엄하게 하고 貴賤을 나누어 禮義가 행해지는 것이 여기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고하였다. 84) 이 序文은 첫째 奴婢條가 『高麗史』 편찬의 기준이 된 『元史』에는 없는 항목이라는 점, 둘째 志에 속한 항목으로는 유일하게 단독의序文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그 내용이 조선 지배층의 노비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일찍이 지적된 바 있었다.85)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은 성리학 사상을 매개로 하였을 때, 奴婢條 序文이 보여주는 조선 지배층의 노비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 곧 강상명분론에 기반을 둔 노비제 인식은 고려 말 이래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으로부터 노비를 天理를 가진 존재이면서도 綱常名分의 질서에서 하위에 놓여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 곧 天民으로 이해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여말선초 奴婢-天民 인식은 고려후기 노비제 개혁론이 조선 지배층의 노비 지배 논리로 이어지는 接點이라고 하겠다.

『高麗史』刑法志 奴婢條 序文에서는 "옛날에 箕子가 朝鮮에 封해지고 法禁八條를 만들어, 서로 도적질한 자는 沒入하여 그 집의 奴婢로 삼았 는데, 東國의 奴婢는 대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여 조선 노비법 의 유래를 箕子 八條法에서 찾았다.86) 奴婢條 서문의 이 같은 내용은 조

치 철학, 정치 가치, 정책 사상, 제2절 萬殊一本.

^{84) 『}高麗史』 过85 志39 刑法2 奴婢.

⁸⁵⁾ 정용숙, 「『高麗史』 刑法志 奴婢項의 檢討 - 撰者의 對奴婢觀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46, 1984 참조.

선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음이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87) 조선초기 箕子는 '朝鮮=東國에서 최초로 교화를 행한 임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88) 箕子 八條法은 노비 지배와 교화를 연결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箕子 八條法이 갖는 의미는 '교화'에 그치지 않는다. 교화를 명분으로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성립되었던 조선초기는 새로운왕조가 문물제도를 정비해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노비 지배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⁸⁹⁾ 『高麗史』 刑法志 奴婢條 序文에서도 '東國奴婢之法'이라고 했거니와 我國/本國 奴婢法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은 당대의 여러 기록에서 발견된다.⁹⁰⁾ 다만 중국과 다르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노비제가 엄격한 上下名分, 風敎 등과 같이 강상질서 및 교화와 관련된다

^{86)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x27;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87) 『}高麗史』刑法志 奴婢條 序文의 내용은 첫째 노비제는 聖人인 箕子가 만든 제도라는 점, 둘째 그렇기에 유구한 전통이 있는 美風이라는 점으로부터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정용숙, 앞의 논문, 1984, p.69, 박진훈, 앞의 논문, 2005, pp.93-109)

^{88)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8월 11일 壬申.

^{&#}x27;朝鮮 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教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太祖實錄』권15 태조 7년 9월 12일 甲申.

^{&#}x27;一 箕子受封朝鮮 實基風化 前朝始祖 統合三韓 俱有功東民 宜置祭田 以時致祀.' 河緯地(1412-1456)、『丹溪遺稿』戊午庭對策.

^{&#}x27;惟我東方 自箕子撫運以來 禮義之美 聞于天下者 非特用夏變夷之俗 亦有別良賤立 奴隸 以定上下之分 而使大夫之家 皆有尊卑之分也 家主奴婢之制一定 而主之視奴 猶君之視臣 奴之事主 猶臣之事君 然則奴婢雖亦天之民 固不變賤爲良與主抗衝也.'

⁸⁹⁾ 中國의 경우에는 이미 唐宋變革 과정에서 하층민의 예속 방식이 雇傭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南宋의 형벌 체계에서는 죄인 및 그 가족을 奴婢로 籍沒하는 것이 폐지되어 '處罰'이라는 오랜 노비 창출의 전통과 실제 노비의 존재가 분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상으로는 士庶間의 차별이 제도화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상적으로는 雇傭奴婢 使役과 士庶間의 분수를 아울러 性理學的 綱常名 分으로 정당화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戴建國,「"主仆名分"与宋代奴婢的法的地位」,『歷史研究』2004-4, 2004, pp.58-72.)

^{90) 『}世宗實錄』 권85 세종 21년 5월 3일 庚戌.

^{&#}x27;我國奴婢之法 雖不通中國 然我國禮義之俗廉恥之風 實由於此.'

[『]世宗實錄』 권105 윤7월 24일 辛丑.

^{&#}x27;然本國奴婢 世世相傳 名分甚嚴 與中國奴婢頓殊 其從良之法 勢難擧行.'

고 보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箕子는 교화를 처음 펼친 임금으로서, 조선의 문물제도가 중국에 버금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이기도 했다.91) 따라서 箕子는 中國 [中華]에 대한 東國의 문화적 지향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왕조가 나름의 위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물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재였다. 이처럼 東國奴婢法의 始原으로 규정된 箕子라는 소재는 중국과 다른 조 선의 노비제를 정당화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중국과 다른 제도를 정당화해야만 했던 사정은 노비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가 明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國初 문물제도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洪武帝의 '聲敎自由' 聖旨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92) 獨自的인 교화, 곧 스스로 聲敎를 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조선초기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수단이었다. 다만 여러 제도 가운데서, 노비제는 각별히 箕子라는 소재를 통해서 '동국의 독자성'과 '교화'라는 두 가지 존재 가치를 함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일찍이 鄭道傳이 朝鮮 國號의 의미를 箕子의 八條之敎와 洪範 之學에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93) 箕子라는 소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91)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5월 9일 丁巳

^{&#}x27;吾東方禮樂文物 侔擬中國者 以有箕子之風.'

[『]太宗實錄』 권17 태종 9년 3월 19일 壬戌.

^{&#}x27;我東方禮樂、刑政、典章、文物 擬諸華夏而無愧者 雖本於箕子之化 亦由道德文章 之臣 笙鏞治道 黼黻王化而然也.'

[『]太宗實錄』권20 태종 10년 9월 29일 癸巳.

^{&#}x27;矧吾東方 爰自古昔 俗尚禮義 服箕子八條之教 彝倫之敍 典章文物之備 侔擬中國.'

⁹²⁾ 고려 조정을 不信하던 明 홍무제가 내린 '聲教自由' 聖旨를 조선초기 지배층들은 '東國이 스스로 교화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제후국으로서 중국과 다른 문물제도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문중양,「15세기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한국사연구』162, 2013; 최종석,「조선초기 국가 위상과'聲教自由'」,『한국사연구』162, 2013; 이명미,「聖旨를 통해 본 정치·외교 환경」,『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사, 2019)

⁹³⁾ 鄭道傳(1342-1398),「國號」,『朝鮮經國典』(上) (『三峯集』 권7) '海東之國 不一其號. ··· 皆竊據一隅不受中國之命 自立名號 互相侵奪 雖有所稱 何 足取哉. 惟箕子受周武之命 封朝鮮侯. ··· 箕子陳武王以洪範 推衍其義 作八條之教

조선왕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중국에 대한 문화적 지향을 표현하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94) 곧 중국과 다른 '東國奴婢之法'은 조선왕조의 정당성이기도 한 '東國의 독자적인 교화' 논리와 연결되어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이는 『高麗史』의 撰者들이 편집체제의 일관성을 어기면서까지 志에 속한 항목으로는 유일하게 奴婢條에만 序文을 삽입함으로써, 奴婢法을 箕子 八條法을 통해 정당화하려 했던이유이기도 했다. 이처럼 노비제의 존재 가치를 정당화하려 노력했던 사정은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노비가 토지와 함께 중요한 물적 토대였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95)

노비가 다른 民과 같이 잘 養育되어야 하는 존재면서도 綱常名分의 질서에서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奴婢-天民 인식의 主旨였다. 그러나 강상명분을 통해서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一國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國初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中國에 대한 문화적 지향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노비제를 정당화했던 것은 箕子를 통해서 설명되는 '독자적인 교화'의 논리였다. 이는 곧 天子-朝鮮國王-兩班士大夫-庶-賤의 세계관 속에서 東國의 교화 주체로 양반 사대부가 자리매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곧 箕子 八條法이라는 소재는 兩班 封建의 관념을 통해서, 비록 중국과 다르지만 양반의 물적 토대로서 매우 중요했던 노비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施之國中 政化盛行 風俗至美 朝鮮之名 聞於天下後世者如此. 今旣襲朝鮮之美號 則箕子之善政亦在所當講焉. 嗚呼 天子之德 無愧於周武 殿下之德 亦豈有愧於箕子哉. 將見洪範之學八條之敎 復行於今日也. 孔子曰 吾其爲東周乎 豈欺我哉.'

^{94) 『}太祖實錄』권3 태조 2년 2월 15일 庚寅, 『太祖實錄』권3 태조 2년 3월 9일 甲寅, 『太宗實錄』권1 태종 1년 2월 6일 乙未.

⁹⁵⁾ 양반 사대부들에게 노비가 토지와 함께 중요한 물적 토대였던 사정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文宗實錄』 권7 문종 1년 5월 19일 丙辰.

^{&#}x27;夫奴婢代主之勞 使之如手足 士家之盛衰 實由蒼赤之有無 關係匪輕 而父子相傳 累世役使奴婢 一朝見奪於他人之手 則其爲冤抑 不啻萬萬.'

[『]世祖實錄』 권46 세조 14년 6월 18일 丙午.

^{&#}x27;我國家奴婢之法 其來尚矣 而士大夫倚以爲生者也. 然相傳之際 契券不明 則爭訟所由起也. 是以設官分理 凡欲傳係者 必告官經署 然後姦僞 無所托焉. 夫田地 人之命脈 奴婢 士之手足 輕重相等 不可偏廢.'

4. '奴婢-天民' 認識의 兩面性과 奴婢 支配

조선왕조의 창업은 당대인들 사이에서 順天應人[應天順人]의 논리로 정당화되었다.96) 太祖의 즉위교서에서도,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君長을 세워 백성을 기르고 편안케 한다고 하였다.97) 하늘이 낳은 백성, 天民은 임금의 赤子로서 善政의 대상이어야 했다. 앞서 고려 말 郎舍의 상소에서 살폈던 것처럼, 奴婢-天民 인식은 노비도 또한 天民이기 때문에 노비가 어려움에 처하면 救護를 해주고 民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노비 또한 임금의 赤子로서 善政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노비를 다른 民과 같이 잘 養育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국초에 있었다는 점은 노비가 善政의 대상이었다는 주요한 근거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비를 유교 윤리 보급의 대상으로 삼는 조치들도 있었다. 예컨대, 태조 4년(1395) 各道에서 보고한 孝子・順孫・義夫・節婦를 旌閭・復戶함에 官奴가 포함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태종 4년(1404)에는 아비를 위한 3년상을 치르고 왜적이 온다는 괴소문에도 어미를 지키려 한 家奴에 대해 復戶를 청하는 보고가 있었다.98) 이외 養老宴, 三年喪의 시행, 壽職의 수여 등에서도 賤人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99) 이처럼 양반 사대부들이 교화를 명분으로 노비 지배를 정당화했던 사정의 맞은편에서, 국가도 유교 윤리를 보급할 대상에 노비를 포함시키고 旌閭・復戶 등의 조치를 통해서 노비들이 유교 윤리를 실천하게끔 장려하고 있었다.

^{96)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0일 己亥,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9월 28일 丙午,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11월 29일 丙午, 『太宗實錄』 권18 태종 9년 9월 8일 丁丑.

^{97)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98)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9월 16일 丁未, 『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2월 27 일 戊戌.

⁹⁹⁾ 최이돈, 앞의 논문, 2011, 제3장 禮治賤人論 참조.

당시 지배층은 民心의 이반은 天譴을 부르고 종국에는 天命의 이탈을 불러와 왕조 자체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天民의 동향을 살피고 그들에게 善政을 베풀어야 하는 당위는 여기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天民인 노비들의 人心이나 民情 또한 국가정책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종조에 주인의 죄를 대신하여 옥중에 간힌 노비들로 인한 和氣의 感傷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100) 태종 9년(1409)에는 東北面 都巡問使 李之源이 便民事宜를 올려, 遷都한 이후로 흉년임에도 私家에서 私奴와 私財를 동원하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원망을 일으킨다며 풍년이 들 때까지 토목공사를 금지하자고 건의하였다. 여기서 이지원은 私家에서 營造하는 물자가 비록 私財와 私奴에서나왔다고 해도, 바로 그 私財와 私奴가 각각 國財와 國民이라고 하였다.101) 이와 같이, 私奴라고 해도 國家의 民인 그들의 人心과 民情을 살펴야 하기에 私家가 함부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 國家가 제재할 수 있다는 관점이 당시 爲政者들에게 있었다.

나아가 노비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에 대해 國家가 개입하는 양상도나타난다. 세종 20년(1438) 국왕은 버려진 아이를 자원하여 기르고자 하면 名簿에 기록하고서 기르도록 할 것을 지시하면서 버려진 아이의 신분이 비록 公・私賤人이라도 원 소속의 官・主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하였다.102) 곧 官・主가 노비에게 적절한 救護를 해주지 않고 버려두면 노비를 사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었다. 이처럼 天民인 노비또한 國家의 民이기에 善政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 정책의 대상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은 노비를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에 一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부터, 노비 지배를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관계, 곧 國家와 私家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國初부터 文籍을

^{100) 『}定宗實錄』 권5 정종 2년 7월 2일 乙丑.

^{101) 『}太宗實錄』 권18 태종 9년 7월 12일 壬午.

^{102) 『}世宗實錄』 권80 세종 20년 3월 20일 甲辰.

만들어 公私奴婢를 등록하자는 논의가 있었다.103) 이러한 논의는 조선 건국 이래 지속된 노비에 대한 권리 분쟁이나 壓良爲賤의 폐단을 막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즉 國家가 私家의 노비 지배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 와 명분은 私家들 사이의 분쟁을 公的 위치에서 조정하고, 私家가 양인 을 노비로 만들어 국역 담당 계층을 약화시키는 행태를 규제하는 데서 마련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私家 또는 親族 사이에서 노비에 대한 권리 분쟁이 극심한 탓에 奴婢辨正都監이 운영되었고, 여기에 都監의 결단에 대한 誤決 시비가 더해져 민심을 소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都監 또한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고 있었다.104) 또한 誤決을 둘러싼 冤抑이 災異를 부른다고 하거나 심지어 노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元隻이 서로를 姦通・反逆 혐의로 誣告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였다.105)

노비 송사를 둘러싼 갈등은 비슷한 시기 설치된 申聞鼓와도 관련되었다. 태종은 "지금 북을 치는 사람들은 모두 노비를 誤決한 것과 訴良 등의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106) 또한 申聞鼓를 설치한 뜻은 원망을줄이고 訟事를 그치게 하려는 것이나 骨肉間에 노비를 둘러싸고 다툼이성하여 和氣를 상하게 하고 水旱의 재앙을 부른다는 상소가 올라오거나, 有服親끼리 家産과 臧獲[奴婢]을 둘러싸고 不睦하고 원수처럼 지내니 쟁송을 할 때에 위로 尊長을 능욕하거나 卑幼를 위협하는 것은 모두 憲司에서 다스리자는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였다.107)

^{103) 『}定宗實錄』 권1 정종 1년 6월 15일 甲寅.

^{104)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11월 28일 戊子,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12월 15일 甲辰, 『定宗實錄』 권1 정종 1년 3월 1일 壬申, 『定宗實錄』 권4 정종 2년 6월 2일 乙未,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1월 14일 甲戌,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1월 15일 乙亥, 『太宗實錄』 권9 태종 5년 5월 8일 壬寅.

¹⁰⁵⁾ 관청의 판결을 거친 것은 誤決이라도 다시 呈訴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원억이 크다고 한 사례 (『太宗實錄』권4 태종 2년 7월 2일 乙未); 반역죄 誣告 (『太宗實錄』권1 태종 1년 5월 1일 乙丑); 간통죄 誣告 (『太宗實錄』태 종 권10 5년 11월 21일 乙丑) 등이 있다.

^{106) 『}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3월 15일 戊戌.

^{107) 『}太宗實錄』권13 태종 7년 5월 22일 乙亥, 『太宗實錄』권24 태종 12년 12 월 6일 丁巳.

태종 13년(1413) 奴婢中分法의 시행은 노비 분쟁의 합리적 처결은 아닐지언정, 同宗끼리의 송사로 인해서 和氣를 상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시행된 국가의 적극적인 簡詞訟 정책이었다.108) 태종 연간에는 私家의노비 지배에 대한 이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책도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태종 14년(1414) 6월의 從父爲良法이 있다. 이 조치에 관해 태종이 '이와같이 한다면 비록 放役의 法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役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從父爲良法은 노비제 자체의 억제를 의도하고 있었다.109) 이러한 태종의 의도에는 '天之生民 本無賤口'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奴婢-天民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良賤이 天民으로서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미 태종 1년(1401)과 5년(1405)에 걸쳐 奴娶良女婚을 규제하는 법이시행되고 있었다.¹¹⁰⁾ 그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從父爲良法은 出産을 통한 私奴婢의 증식을 억제하여, 결국에는 私奴婢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규제책이면서 私家의 노비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책이었다. 이처럼 良賤交婚 억제를 통해 私家의 노비 지배를 제약한 것은, 태종 14년 당시에 노비 쟁송으로 인한 피로가 극심했던 탓이었다. 당시는 노비 결송으로 인한 和氣의 손상이 끊이지 않는 災異로 이어진다는 주장, 辨正都監 및 그 출장소인 都會所의 활동이 민심을 소란하게 한다는 주장이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¹¹¹⁾

¹⁰⁸⁾ 奴婢中分法은 태종 13년 9월 1일 제정되었다. 9월 1일 이전에 소송하는 자는 양쪽에 中分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소송 당사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람의 수에 따라 나누어주며 노비의 수가 中分할 수 없으면 뒤에 태어나는 노비로 보충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强壯老弱한 노비를 두루 합하여 제비뽑기를 하여 中分하며 京中은 10월까지, 外方은 12월까지 分給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太宗實錄』권26 태종 13년 9월 20일丙申)

^{110) 『}太宗實錄』권2 태종 1년 7월 27일 甲寅, 『太宗實錄』권10 태종 5년 9월 22일 甲寅.

태종 15년(1415) 1월에는 형조판서 沈溫이 "하늘이 백성을 냄에 본래 賤口는 없는데, 一般天民을 가지고 私財로 여겨 父祖奴婢라 칭하며 서로 다투며 송사함이 끝이 없다고" 하였다.112) 이는 奴婢-天民 인식에 기반을 두고서 노비에 대한 私家의 지배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주장으로, 태종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노비 쟁송에 대한 비판은 天民인노비를 私財로 여기는 관점에 대한 비판과 불가분이었으며 공양왕 3년 郎舍의 상소가 담은 奴婢-天民 인식의 문제의식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良賤이 근본적으로는 (天)民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노비를 私財로 여겨 서로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투거나 양천교혼을 통해 노비를 중식하려고 하는 페단을 규제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 주장들이 良人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國家의 적극적인 노비제 억제책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검토되었던 私奴定限法 또한 노비 소유의 不均을 해소하여 쟁송을 그치게 하고 양인 인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었다.113)

그러나 國家의 적극적인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私奴定限 法이 논의에만 그쳤을 뿐만 아니라,114) 良賤交婚을 통한 私奴婢 증식이 억제되었던 당시에도 여전히 奴良妻幷産 소생이 적지 않았다. 상속문서 등의 古文書를 검토하였을 때에 당시 상속된 노비 가운데 奴良妻幷産 비중이 25~33%에 달할 정도였다.115) 또한 세종 14년(1432) 3월 公・私婢와 良夫의 通奸을 금하기는 하되, 소생을 良人으로 삼지 않고 각각 官・主에게 주게 함으로써 從父爲良은 중단되고, 婢嫁良夫婚에 대한 규제는 그 취지를 잃게 되었다.116)

^{111) 『}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5월 2일 甲戌, 5월 28일 庚子 ; 6월 6일 丁未.

^{112) 『}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1월 20일 己未.

^{113) 『}太宗實錄』 권28 대종 14년 9월 26일 丙申, 『太宗實錄』 권30 대종 15년 11월 11일 甲辰.

¹¹⁴⁾ 박진훈, 앞의 논문, 2005, 제3장 朝鮮初期 私奴婢 소유의 분할과 제한 정책 참조.

¹¹⁵⁾ 한상권. 「15세기 奴良妻交婚 정책과 交婚 실태」. 『고문서연구』29, 2006 참조.

^{116)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3월 15일 甲戌, 3월 25일 甲申, 3월 26일 乙酉.

당시 從父爲良法의 존폐를 논의하면서 세종은 犯奸 소생을 양인으로하는 대신 屬公하는 것은 어떠하냐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세종의물음에 당시 詳定所 提調로 논의에 참여한 孟思誠 등은 이미 私家 奴婢가 公處에 投托함이 많아 자기 자식을 公奴婢로 하려는 婢들이 고의로犯奸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하였다.¹¹⁷⁾ 이 지적은 國家와 私家 사이의이해관계를 둘러싼 從父爲良法 논의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곧 從父爲良法의 폐지는 양천교혼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키려 한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한 것이었다.

私刑-主殺奴婢 문제는 노비를 둘러싼 國家와 私家의 관계를 살펴볼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다.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노비에 대한 天民으로서의 적절한 대우, 노비지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종 8년 (1426) 국왕은 刑曹로부터 주인이 종을 죽인 일과 관련한 보고가 있어서, 主殺奴婢에 대한 금령을 더욱 엄하게 하려고 하였다.118) 당시는 노비에게 酷刑을 가한 주인에게 杖 100대를 치게 하거나, 官婢에게 출산휴가 100일을 지급하는 조치들이 있었다.119) 또한 金道練이 자기가 소송하였던 노비들을 권세가들에게 증여한 사건으로 인해, 壓良爲賤이나 노비를 이용한 賄賂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었다.120) 곧 노비를 다른 民과 같이 養育하려는 조치, 私家의 노비 지배에 대한 國家의 개입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세종이 主殺奴婢에 대한 금령을 더 엄하게 하려고 하자, 卞季良은 朱子가 '살인이 비록 중하나 노비를 죽임과 같은 것이 어찌 가볍지 않겠는 가.'라고 말했다며 반대하였다.¹²¹⁾ 본디 朱子의 德刑論은 刑政의 운영에

^{117)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3월 25일 甲申.

^{118) 『}世宗實錄』 권34 세종 8년 12월 8일 丁卯.

^{119)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2일 丙寅, 『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4월 17일 庚辰.

^{120)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3월 4일 戊戌.

^{121) …} 卞季良啓曰 爲政之體 莫大於名分 主奴之尊卑 亦名分之所寓也. 凡立法 須當 尊上抑下 令申明此法 彼無知奴婢 必曰主雖枉刑 終必得罪 反肆橫逆 末流之弊 不可

서 강상명분을 重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三綱五倫을 어긴 범죄자는 용서하지 말고 嚴刑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122) 卞季良은 朱子의 德刑論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인이 노비를 죽인 것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면 奴主 사이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하였다. 이와 같이 강상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양반 사대부들은 主殺奴婢 문제에 대하여 國家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국왕과 신료들의 정책 논의에서 강상명분의 질서를 내세운 사대부들의 입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세종 9년(1427) 8월 集賢殿 應敎 權採의 집에서 家婢를 학대한 사건이 있었을때에, 국왕이 權採의 직첩을 회수하고 權採를 외방에 付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조판서 許稠가 知申事 鄭欽之에게 君臣-父子-主奴의 관계가다 같은데, 綱常의 문란함이 일어날까 두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국왕이 결국 權採를 파직만 하기로 결정하였다.123)

세종 16년(1434)에는 국왕이 주인이 노비를 거리낌 없이 때려죽인다고하면서, 그 처벌 방침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노비가 本主를 고발한 것은 『續刑典』에 處絞하라는 법이 이미 있으나 本主가 노비를 죽인 것은 고발되는 조목이 없다는 것이었다.124) 얼마 뒤 刑曹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방침을 아뢰었다. 本主로서 노비에게 枉刑을 쓰는 자가 있거든, 三切隣과 五家長이 이를 금지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만

勝言. 朱子亦曰 殺人雖重 如殺奴婢 豈不輕乎. 今如有枉刑致死者 雖不立法 依律論 罪 亦何難哉. … (『世宗實錄』권34 세종 8년 12월 8일 丁卯)

^{122) 『}朱子文集』 권14 戊申延和奏箚.

[&]quot;… 故臣伏願陛下深詔中外司政典獄之官 凡有獄訟 必先論其尊卑上下長幼親疏之分而後聽其曲直之辭 凡以下犯上以卑凌尊者 雖直不右 其不直者 罪加凡人之坐. … 臣 伏見近年以來 或以妻殺父 或以族子殺族父 或以地客殺地主 而有司議刑 卒從流宥之法 夫殺人者不死 傷人者不刑 雖二帝三王 不能以此爲治於天下 而況於其 繫於父子之親君臣之義三綱之重 又非凡人之非者乎."

강상명분의 질서 및 형벌에 대한 朱子 등 宋代 理學 사상가들의 입장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류쩌화, 앞의 책, 제6장 송대 리학의 정치 철학, 정치 가치, 정책 사상, 제4절 덕과 형: 爲民請命과 爲民請殺)

^{123) 『}世宗實錄』권37 세종 9년 8월 20일 己亥, 8월 24일 乙卯, 8월 27일 壬午, 8월 20일 甲申, 9월 4일 乙丑.

^{124)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6월 8일 癸丑.

일 枉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면 三切隣과 五家長이 管領에게 告하고 외방에서는 監考・里正・里長이 告하여 죄를 따지게 하자고 하였다. 다만 노비들이 三切隣과 色掌을 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면 奴婢告家長罪에따라 남을 使嗾하여 주인을 고발한 노비를 처벌하자고 하였다. 곧 枉刑이나 毆殺에 대해서, 노비가 직접-간접적으로 고발하게 할 수는 없으나이웃에서 고발하면 그를 처벌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세종은 이러한 刑曹의 啓를 그대로 따랐다.125)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枉刑과 歐殺을 규제하는 데에 적잖은 한계가 있었는데, 세종 스스로도 그러한 한계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다음의 사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종 7년(1425) 국왕은 밤늦도록술을 마시는 폐습을 司憲府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규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司憲府 執義가 평민의 집에 비하여 朝官의 집은 쉽게 규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은 "濁酒를 마시는 자는 잡히지만 淸酒를 마시는 자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규찰하라고 말하였다.126) 비록 夜飮하는 폐풍을 논의한 것이지만, 國家나 官의 公權이 朝官들을 비롯한 私家의 지배층에게 효과적으로 미치기 어렵다는 세종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 26년(1444) 국왕은 동왕 8년과 16년에 이어, 天民인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폐단을 문제 삼으면서 노비를 때려죽이거나 참혹한 방법으로 濫殺한 자를 규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죄 지은 노비를 私家에서 가볍게 벌하는 것 정도는 고칠 수 없고 관련된 피해자들을 從良할 수도 없다는 현실론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127) 곧 私家에서 노비를 지배하는 양반

^{125)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6월 27일 壬申.

^{126)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2월 14일 己卯.

^{127) 『}世宗實錄』 권105 세종 26년 윤7월 24일 辛丑.

^{&#}x27;傳旨刑曹 本國奴婢之法 所以嚴上下之分 綱常由是而益因 故奴婢有罪而其主殺之 議者例皆揚其主而抑其奴 此誠良法美意也. 然賞罰 人君之大柄 以人君而殺一無辜 天之福善禍淫 尚且不僭 況奴婢雖賤 莫非天民也?以人臣而役天民 亦云足矣 其可擅行刑罰而濫殺無辜乎? 人君之德 好生而已. … 然本國奴婢 世世相傳 名分甚嚴 與中國奴婢頓殊 其從良之法 勢難擧行. 且奴婢有罪者 其主論罰之法 行之已久 未易遽革也.'

사대부들에 대한 國家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國家와 私家 사이에서 노비 지배를 둘러싸고 각각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것은 당시 지배층의 노비 인식, 곧 奴婢-天民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앞선 사례들에서도 세종이 天民인 노비를 私家에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비록 國初의 사례는 아니지만, 성종 19년(1488)의 사례도 있다. 당시 李譁라는 자가 여종 同非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국왕은 가해자로 지목된 李譁를 엄형으로 다스리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李譁의 친족들에게 연좌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백성을 냄에 본래 귀천이 없었다. 비록 奴主라고 이르지만 모두 天民이다.'라고 하였다.128) 이처럼 奴婢-天民 인식은 노비에 대한 주인의 자의적인 살해를 억제하고 노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논하는 주된 근거가되었다. 이러한 성종의 입장에 대해 신하들은 刑政에서 강상명분을 중하여야 함을 한다며 그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비제의 존재 의의를 강상명분과 연결시키면서 성종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 豪悍한 노비들이 주인을 얕잡아보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129)

이처럼 조선전기 지배층 사이에서는 노비가 비록 賤하지만 또한 天民 이라는 麗末鮮初 이래의 노비제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조선전기 에 국왕과 신료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天民 개념이 활용된 사례

^{128) 『}成宗實錄』 권217 성종 19년 6월 18일 庚戌.

^{&#}x27;天生蒸民 本無貴賤. 雖名爲奴主 初一天民也. 今若人人謂爲己奴僕而逞其殘虐 則是害天民也 其謂之有君有法乎. 且爾等以爲律外之刑 不可用也 則當其初 曷不諫止而今乃言之歟.'

^{129) 『}成宗實錄』 권217 성종 19년 6월 18일 庚戌.

^{&#}x27;弘文館副提學 安瑚 等 上箚子曰 … 謹按律文 奴婢有罪 其家長及家長之期親若外祖父母 不告官司而敺殺者 杖一百 無罪而殺者 杖六十、徒一年. 若奴婢之於家長 但歐者必死 殺者凌遲. 其制律如此 所以重名分也. 以此防之 猶豪奴悍婢與弱主抗 甚至殺害者有之. 奴婢殺主 悖逆無比 而止坐其身 主殺奴婢 而罪及其族 用刑不幾於顚倒平'

^{&#}x27;典翰李昌臣啓曰 本國古稱禮義之邦 以有奴婢而上下分嚴也. 近來奴隷有殺其主者 只坐其身 而主殺其婢 則罪及六寸 恐豪奴悍婢 挾其强而弱其主者 從此滋矣.'

를 검토해보면, 天民이 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상을 지칭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天民이 전체 臣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적잖은 경우에 雇工, 僧徒, 奴婢와 같이 조선 사회에서 賤視된 계층을 지칭하였다.130) 이 경우 굳이 天民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백성과는 달리, 특별히 賤視된 계층에 대해서 "이들도 또한 한가지로 天民인데"라는 식의 용법이 보통이었다.131) 곧 奴婢-天民 인식에 따라 主殺奴婢를 규제하고자 했던 국왕들의 입장은 사회적으로 賤視된 계층들까지 국가의 公民이자 임금의 赤子로 대우하고자 했던 생각에서 비롯하였다. 그러한 국왕의 입장은 때때로 국왕권을 제약하고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양반 사대부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이다.132)

세종 연간에는 판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지급하고, 주인(官・主)에게 노비에 대한 적절한 救護를 강제하며, 국가 의례에 賤人을 참여시키는 조치들이 있었다. 그 맞은편에서는, 노비의 주인 고소를 금지하여 강상명분을 확립하고 從父爲良法을 폐지하여 양반 노비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들이 있었다.[133] 이렇게 같은 국왕의 치세에 서로 상반된 듯한 조치들이 있었던 사정은 國家와 私家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타협・조정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奴婢-天民 인식의 兩面性과 관련되어 있었다.

奴婢-天民 인식을 토대로 하여, 良賤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에

^{130) 『}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 1월 20일 己未, 『世宗實錄』 권105 세종 26년 윤7월 24일 辛丑, 『世祖實錄』 권46 세조 14년 6월 18일 丙午, 『明宗實錄』 권12 명종 6년 11월 17일 辛丑.

¹³¹⁾ 실록에서 天民이란 용어가 나타난 사례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 도환, 「北學派 民에 대한 인식」,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pp.83-84)

¹³²⁾ 대표적으로 명종 6년 江西寺 住持 道悟를 유생 趙應奎가 구타한 사건이 있다. 명종은 道悟를 구타한 유생 趙應奎를 엄벌에 처하려 했고 내관까지 파견하였다. 이에 대해 성균관 유생들과 同知成均館事 周世鵬은 명종의 天民 개념 활용을 비판하면서 "매번 天民을 말하며, 무고한 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所謂 民이란 힘써 윗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하거나 "백성은 모두가 天民인데 어째서 道悟만이 天民이냐며" 강상질서에 입각한 刑政의 운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명종과 왕실의 숭불 경향까지도 비판하였다. (『明宗實錄』권12 명종 6년 12월 5일 戊午, 12월 6일 己未)

¹³³⁾ 노비의 주인 고소 금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世宗實錄』권9 세종 2년 9월 13일 戊寅, 『世宗實錄』권15 세종 4년 2월 3일 庚寅)

기반을 둔 정책이나 私家의 노비 지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들은 양반 사대부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였다. 양반 사대부들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바로 그 天民이야말로 강상명분을 확립해야할 교화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國家와 私家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및 그 조정 과정은 麗末鮮初 지배층의 노비 인식 - 奴婢-天民 인식의 두 측면 사이를 오가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노비를 다른 民과같이 잘養育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상명분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 天民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공존하였기 때문이다. 곧 奴婢-天民 인식의兩面性 때문이었다. 天理를 가진 존재로서 良賤이 동등하기에 賤視되는존재들까지 모두 국가의 공민이자 임금의 赤子로서 적절히 대우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일방을 이루었다면, 天分에 따른 강상질서를 확립하여 그에 따라 刑政 등을 비롯한 국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일방을 이루었던 것이다.

5. 結語

지금까지 奴婢-天民 인식이 고려 말에 등장한 배경과 조선 지배층의 노비 지배에서 갖는 의미를 그 인식의 兩面性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후기에 성리학 사상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던 사대부 세력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시 노비 문제의 실태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사대부 세력은 두 측면 각각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였고, 이들이 보여준 노비 인식의 兩面性은 고려 말기에 이르러 天民이라는 개념으로 종합될 수 있었다. 사대부 세력이 주도한 개혁운동의 결과로 창업된 조선왕조가 실시한 노비 정책 또한 兩面性을 띠고 있었고, 조선초기 노비 존재를 둘러싼 國家와 私家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兩面性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논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숙왕 후8년 감찰사의 금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려후기 사회문제에 대한 儒者들의 문제의식은 노비에게 적절한 救護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노비의 참람한 행동 또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당대에 금령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의 문제의식은 성리학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더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급진파의 개혁 주장에 보이는 奴婢-天民 인식은 사대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民人들과 마찬가지로 노비도잘 양육하여야 한다는 뜻을 담았지만, 같은 시기 급진파의 개혁론에는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있었다.

고려후기 儒者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노비제 인식의 兩面性은 조선 초기 국가의 노비 정책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었다. 조선초기 지배층은 東國의 奴婢法이 箕子 八條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東國이 독 자적으로 敎化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중국과 다른 노비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새롭게 天民으로 규정된 노비는 天分에 의

한 綱常 질서에서 아래에 놓인 敎化의 대상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노비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과정은 새롭게 사회 지배층이 된 사대부 세력이 고려후기 이래 노비들이 보여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참 람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성리학의 강상명분론을 통해 대응해 간 양상을 보여준다.

양반 사대부들이 강상명분론을 통해 자신들의 노비 지배를 강화해간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 天民인 노비를 국가의 公民으로 합당하게 대우하려는 國家의 의지와 충돌하곤 했다. 國家와 私家가 노비 지배에서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한 사정은 당시 지배층의 노비 인식, 곧 奴婢-天民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良賤이 모두 天民이기에 私奴라고 해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國家는 私家의 노비 지배에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반면, 양반 사대부들은 天民인 노비야말로교화의 대상이므로 노비가 강상명분의 질서에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고주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奴婢-天民 인식의 양면성은 고려후기 노비 문제에 대한 사대부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성리학 사상을 매개로 계승되어 온 것이었다.

奴婢-天民 인식에 대한 이상의 작업은 지배층의 노비 인식을 중심으로 고려후기 노비 문제와 그에 대한 성리학적 개혁론, 조선 국가의 노비제 정비 과정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왕조교체 시기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여말선초 지배층의 노비 인식은 곧 이 시기 노비의 실제 존재와도 관련될 것이다. 조선전기 양반 사대부의 노비 지배 실태와 그와 직결된 노비의 존재양상은 지배층의 노비제 인식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이나,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사회변동 속에서 전개된 노비제 개혁론과奴婢-天民 인식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지배층의 노비제 인식이 변모해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1. 자료

1) 經典

『詩經集傳』、『書經集傳』、『論語』

『大學衍義』,『近思錄集解』,『朱子文集』

2) 年代記

『高麗史』,『高麗史節要』,『實錄』,『漢書』,『明 實錄』

3) 文集

『稼亭集』,『拙藁千百』,『貞齋逸稿』,『陶隱集』,『牧隱文藁』

『三峯集』,『丹溪遺稿』,『慵齋叢話』,『武陵續集』

2. 연구 논저

1) 연구서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 역사비평사, 2014.

김당택, 『高麗의 武人政權』, 국학자료원, 1999.

김동구, 『孟子集註: 朱熹集註』, 명문당, 2010.

김동진,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2017.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아카넷, 2016.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8.

김영수, 『건국의 정치 -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전환』, 이학사, 2016.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김용선, 『高麗時代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김종선, 『한국 고대국가의 노예와 농민』,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 연구소, 1997.

김충렬,『[增補] 高麗 儒學史』,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8.

김현라, 『고려후기 신분 변동 연구』, 혜안, 2018.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 연구』, 일조각, 1999.

류쩌화, 장현근 譯, 『중국정치사상사』, 글항아리, 2019.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4.

변동명,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 硏究』, 일조각, 1995.

손병규, 『호적 1606-1923, 호구 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 트, 2007.

守本順一郎, 김수길 譯, 『동양정치사상사연구 - 주자사상의 사회경제적 분석』, 동녘, 1985.

신은제, 『高麗時代 田莊의 구조와 경영』, 경인문화사, 2010.

안승준, 『조선전기 사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2007.

역사학회 編,『노비, 농노, 노예 - 예속민의 비교사』, 일조각, 19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혜안, 2000.

오금성 외, 『명말・청초 사회의 조명』, 한울, 1990.

오영교 편,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혜안, 2004.

오일순, 『高麗時代 役制와 身分制 變動』, 혜안, 2000.

유승원,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7.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______,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증보판 - 조선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2.

이기석, 『新譯 詩經』, 홍신문화사, 1994.

이남복, 『고려후기 신흥사족 연구』, 경인문화사, 2004.

이석규, 『'民'에서 '民族'으로』, 선인, 2006.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1.

이영훈, 『한국경제사』, 일조각, 2017.

이정신, 『高麗 武臣政權期 農民·賤民 抗爭 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1.

이재룡, 『조선초기 사회구조 연구』, 일조각, 1984.

李澤厚, 정병석 譯『중국고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전형택, 『조선 양반 사회와 노비』, 문현, 2010.

정요근 외,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비평, 2019.

정준식, 『한국 노비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0.

존 던컨, 김범 譯, 『조선왕조의 기원』, 너머북스, 2013.

中村哲, 안병직 譯, 『노예제・농노제의 이론』, 지식산업사, 2000.

지승종, 『朝鮮前期 奴婢 身分 硏究』, 일조각. 1995.

平木實, 『朝鮮後期 奴婢制 硏究』, 지식산업사, 1982.

한국고문서학회 編, 『동아시아 근세 사회의 비교 - 신분, 촌락, 토지소 유관계』, 혜안, 2006.

戶川芳郞 외, 조성을 외 譯, 『유교사』, 이론과 실천, 1990.

홍승기, 『고려시대 노비 연구』, 한국연구원, 1981.

, 『고려 귀족사회와 노비』, 일조각, 1983.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Eric Wolf, "Peasant_,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66.

Orlando Patterson, "Slavery and social death,",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2) 연구 논문

강문식,「權近의 經學과 經世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경석현,「『朝鮮王朝實錄』 災異 기록의 재인식 - 16세기 災異論의 정치 ・사상적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160, 2013.

- 구병삭,「韓國 古代 奴婢制度 高麗時代 奴婢制度 研究의 基礎로서」,『法史學研究』1, 1974.
- 구지현, 「조선시대 동중서의 이미지 형성 양상」, 『동아인문학』37, 2016.
- 권두규,「高麗時代 官人의 親族 範圍 八世戶籍을 중심으로」,『安東史 學』1, 1994.
- 김건대, 「李滉의 家産經營과 治産理財」, 『퇴계학보』130, 2011.
- 김광수, 「高麗 官班體制의 變化와 兩班戶籍整理」, 『역사교육』35, 1984.
- 김기주, 「麗末鮮初 朱子學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특징」, 『陽明學』18, 2007.
- 김난옥, 「고려말 四件奴婢의 유형화와 노비정책」, 『한국사연구』145, 2009.
- 김동민, 「동중서 춘추학의 천인감응론에 대한 고찰 상서·재이설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36, 2004.
- 김동진, 「朝鮮前期 白丁에 대한 齊民化 政策의 成果」, 『역사민속학』29, 2009.
- _____, 「16세기 星州地方 白丁系列 家系의 社會經濟的 位相 變動」, 『역 사와 담론』61, 2012.
- 김명희, 「唐代 法律의 分析을 통한 賤民制度의 考察」, 『성곡논총』28(4), 1997.
- 김석형,「奴婢論」,『朝鮮 封建時代 農民의 階級 構成』, 신서원, 1993.
- 김성우,「16세기 良少賤多 현상의 발생과 국가의 대응」, 『경제사학』29, 2000.
- 김안숙ㆍ이호철,「朝鮮前期의 農莊經營과 奴婢」, 『경영사학』1, 1986.
- 김유철, 「중국사에서 예속민과 신분제」, 역사학회 編, 『노비·농노·노예 -예속민의 비교사』, 1998.
- 김윤정, 「충렬왕대'衣冠改變令'의 반포와 國俗의 보존」, 『東方學志』176, 2016.

.「13-14세기 고려 지식인의 시대 인식과 정체성」.『역사와 현실』 115, 2020. 김현라, 「高麗後期 奴婢制의 變化樣相」, 『釜大史學』17, 1993. 김현영. 「'高麗判定百姓'의 실체와 성격 - 14세기 말・15세기 초 양인 확 보 정책과 관련하여.. 『사학연구』38. 1984. 김형수, 「충숙왕 후8년(1339) 監察司 榜과 忠惠王의 復位」, 『한국중세사 연구』11. 2001. , 「조선왕조의 건국과 태조 즉위교서의 성격」, 『석당논총』66, 2016. 김훈식, 「여말선초의 민본사상과 명분론」, 『애산학보』30, 1986. 남풍현,「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 - 高麗時代 吏讀 硏究의 一環으로」, 『고문서연구』12. 1997. 문중양,「15세기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162, 2013. 문철영,「高麗 中·後期 儒學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 구』42, 2003. 박원호, 「명말·청초의 민중 반란」, 오금성 외, 『명말·청초 사회의 조명 』, 한울, 1990. 박재경. 「조선시대 對策의 중국 대책 수용 양상 - 董仲舒의 天人三策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40-2, 2017. 박진훈. 「고려말 개혁파 사대부의 노비변정책 - 조준 · 정도전계의 방안을 중심으로, 『학림』19, 1998. ,「여말선초 노비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선초기 사노비정한법 논의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62,

배상현, 「高麗後期 農場奴婢의 形成과 社會經濟的 地位」, 『역사와 경계』

____,「고려후기 전민변정과 조선초기 노비 정책의 의의와 한계..『역

2006.

사비평』122, 2018.

- 5, 1991.
- 백민정, 「조선 지식인의 王政論과 정치적 公共性-箕子朝鮮 및 中華主義 문제와 관련하여」, 『東方學志』164, 2013.
- 변태섭,「萬積의 亂 發生의 社會的 素地」,『史學研究』4, 1959.
- 부남철,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周禮』」, 『退溪學과 韓國文化』43, 2008.
- 성봉현, 「高麗時代 奴婢法制 再檢討」, 『역사와 담론』19-20, 1992.
- _____, 「조선 태종대 노비 결절책과 그 성격 : 태종 5년 노비결절조목을 중심으로」, 『진단학보』88, 1999.
-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노비론」, 『한국인물사연구』19, 2013.
- 송재혁, 「정도전의 신질서 구상과 『서경』」, 『아세아연구』60-3, 2017.
- 송희준,「『近思錄』의 도입과 이해」, 『韓國學論集』25, 1998.
- 신소연, 「고려후기 전민변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신은제, 「원종, 충렬왕대 전민변정사업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21, 2006.
- 안승준,「南原 順興安氏 安處順 宗家 所藏 高文書와 그 성격」,『古文書集 成』98, 2010.
- 양동휴·이영훈, 「朝鮮 奴婢制와 美國 黑人 奴隷制 比較史的 考察」, 『經濟論集』37-2·3, 1998.
- 유기준,「朝鮮初期 奴婢 犯罪와 刑政」,『湖西史學』16, 1988.
- 이경식, 「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 『동방학지』94, 1996.
- _____, 「朝鮮 建國의 性格問題」,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건국』, 혜안, 2005.
- 이강한, 「고려・원간'交婚'법제의 충돌」, 『동방학지』150, 2010.
- _____, 「征東行省官 闊里吉思의 고려 제도 개변 시도」, 『한국사연구』 139, 2007.
- 이명미, 「聖旨를 통해 본 정치・외교 환경」,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

- 비평사, 2019.
- 이민우, 「여말선초 私田 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15.
- 이상국, 「고려 정종 5년(1039)'賤者隨母之法'의 제정과 그 의의」, 『사림』 34, 2009.
- 이상호, 「書經의 好生之德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112, 2017.
- _____,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종기 재이관의 특징」, 『국학연구』21, 2012.
- 이석규,「麗末鮮初 新興儒臣의 民에 대한 인식」, 『조선시대사학보』31, 2004.
- 이석현, 「宋代 雇傭奴婢의 등장과 奴婢觀의 變化」, 『東洋史學研究』63, 1998.
- _____, 「'忠僕'과'頑僕'- 宋代의 隸屬民像과 관련하여」, 『中國史硏究』 23, 2003.
- 이수건, 「조선 태종조에 있어서의 대노비 시책」, 『대구사학』1, 1969.
- 이승환, 「理一分殊 담론의 사회·현실적 의미와 기능 성리학의 신분 제 정당화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57, 2018.
- 이연승, 「동중서의 천인상관설에 관하여」, 『종교문화연구』2, 2000.
- 이영훈,「한국사에 있어서 토지제도의 발전과정」,『고문서연구』15, 1999.
- _____,「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역사학회 編, 『노비· 농노·노예 - 예속민의 비교사』, 일조각, 1998.
- _____,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 강좌』40, 2007.
- 이원석, 「魯齋 許衡(1209-1281)의 생애와 철학 사상」, 『규장각』29, 2006.
- 이인철,「한국 고대사회에서 노비와 노비 노동의 역할」,『한국고대사연구 』29, 2003.
- 이종서, 「고려말의 신분질서와 정도전의 왕조 교체 세력 합류」, 『역사와 현실』112, 2019.

- 이혜옥, 「고려시대의 家와 家 의식」, 『東方學志』129, 2005.
- 이홍두, 「조선전기 노비종부법과 천인의 신분 상승」, 『실학사상연구』12, 1999.
- 임상혁,「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法史學研究』36. 2007.
- 임학성,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동아시아의 奴婢史 비교를 위한 摸索」, 『역사민속학』41, 2013.
- 전세영,「퇴계 인본주의와 奴婢觀의 相馳性」,『한국 동양 정치사상사 연구』17-2, 2018.
- 전영섭, 「戶婚法을 통해 본 唐宋元과 高麗의 가족 질서와 賤人」, 『역사와 경계』65, 2007.
- _____, 「高麗時代 身分制에 대한 再檢討」, 『민족문화논총』37, 2007.
- ______, 「唐·日本·高麗의 部曲·家人·家奴 비교 연구-그 基源과 特 徵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30, 2012.
- 전용우,「朝鮮初期 兩班들의 노비 관련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湖西史 學』17, 1989.
-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全南史學』17, 2001.
- 정용숙,「『高麗史』刑法志 奴婢項의 檢討 撰者의 對奴婢觀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46, 1984.
- 조법종,「한국 고대사회 노비제의 특성」,『한국사학보』15, 2003.
- ____, 「신라 왕권과 노비제」, 『신라문화』22, 2003.
- 조좌호, 「중국 고대의 노비제도 秦漢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7, 1954.
- 최병운, 「조선 태조조의 노비의 변정에 관하여」, 『전북사학』2, 1978.
- 최봉준, 「14-15세기 성리학의 수용과 조선적 문명교화론의 탄생」, 『역사 비평』124, 2018.
- ____, 「조선 국호로 본 여말선초의 역사인식과 이상국가론」, 『역사와

현실』108, 2018. 최이돈, 「조선초기 賤人天民論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57, 2011. 최종석, 「조선초기'時王之制'의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조선시대사학보』52, 2010. ,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한국사연구』162, 2013. ,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 보편의 추구」, 『한국사 연구』180, 2018. 최홍원, 「주세붕 〈오륜가〉의 표현 전략 연구」, 『韓國言語文學』84, 2013. 한상권, 「15세기 노양처교혼 정책과 교혼 실태」, 『고문서연구』29, 2006. Ellen Salem, Slavery in medieval Korea, Columbia University Ph.D. 1978. , 「Slavery in Koryo - Source and interpretations」, 『성곡논 총』8, 1997. James Palais, 'Slavery and Slave Society in the Koryŏ Period,, " Journal of Korean Studies 5, 1984. 龜田敬二、「高麗の奴婢に就て」、『青丘學叢』26·28, 1936·1937. 今石二三雄、「高麗朝に於ける奴婢について」、『桑原博士環曆記念東洋史論 叢』、1930. 鮎貝房之進、「奴婢攷」、『雜攷』9、1938. 周藤吉之、「麗末鮮初に於ける農莊に就いて」、『靑丘學叢』19. 1934. ____,「高麗末期より李朝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歴史學研究』9, 1939.

戴建國,「"主仆名分"与宋代奴婢的法的地位」,『歷史研究』2004-4, 2004.

Abstract

The view of *Nobi* as a *Cheonmin* during the late *Koryo* and the early *Chosun* period and the double-sidedness of that view

Choi, Won-ha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view of *Nobi*(奴婢) as a *Cheonmin*(天民) during the late *Koryo*(高麗) and the early *Chosun*(朝鮮) and the meaning of the double-sidedness of that vie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mainly i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late *Koryo* and the early *Chosun* period focusing on the view of *Nobi* based on neo-Confucianism(性理學).

The newly growing Sadaebu(士大夫), who witnessed the Nobi problem of late Koryo period, argued the proper treatment of Nobi and the suppression against the Nobi's presumptuous behaviors. Their double-sided positions on the Nobi problem can be confirmed in the public notice of Gamchalsa(監察司), which was issued in 1339, and were further embodied in the Sinjin-sadaebu's (新進士大夫) insistence on reformation of Nobi system, resulting in the double-sided view of Nobi as a Cheonmin(天民) at the end of the Koryo.

In this context, the Nobi policy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was also accompanied by a policy to treat Nobi like other commoners and to restrain *Nobi*'s presumptuous behavior by establishing an order of status. In the same period, Yangban(兩班) class regarded Ki Tse(箕子)'s eight clauses law (八條法) as the origin of Dongguk Nobi(東國奴婢), and thought the existence of Nobi was helpful for the edification. The Yangban class' perspective on Nobi could be possible because Nobi was defined Cheonmin, the object of edification placed below in the order of *Cheonbun*(天分). Therefore, the view of *Nobi* as a *Cheonmin* was the basis on which the Yangban class justified their domination of Nobi through the order of status set by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The will of Yangban class to establish control over Nobi sometimes conflicted with that of the state(國家) to treat them as Gongmin(公民).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tate and the Saga(私家) clashed over the rule of Nobi were related to the double-sidedness of the view of Nobi as a Cheonmin. The state wanted to intervene in Saga's control of Nobi, with the view that even if it was a $Sano(\Lambda M)$, it should receive the same reasonable treatment as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Yangban class tried to stop the state from intervening, arguing that Nobi, who are Cheonmin, should be placed under the order of statu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edification.

keywords: Nobi(奴婢), Cheonmin(天民), Nobi policy, Sadaebu(士大夫), Neo-Confucianism. View of Nobi as a Cheonmin

Student Number: 2018-21981